

제418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1월25일(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8)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4)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8)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1)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5)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4)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5)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9)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1)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1)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2)

상정된 안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2) 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8) 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4) 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8) 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1) 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5) 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4) 2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5) 2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9) 2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1) 2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1) 2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2) 2

(10시01분 개의)

○소위원장 임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회의 때 마무리하지 못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먼저 심사한 후에 다음 의사일정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2)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8)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4)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8)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1)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5)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4)
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5)
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9)
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1)
11.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1)
12.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2)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먼저 1항부터 4항, 지난 회의 때 심사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경과까요.

별지의 표지 바로 뒤 페이지의 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별지 자료의 표지 뒷면에 표를 하나 추가해 두었습니다.

체육계 인권침해 등 관련 분야의 국민체육진흥법 심사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장관의 징계 재심의요구, 윤리센터에도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징계 재심의요구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한하는 내용. 그리고 90일 이내 그 결과에 대해서 재보고하는 의무 등 그것은 오늘 심사를 추가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요구 미이행 시 불이익조치에 대해서 3년 이내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하는 게 과도하다는 측면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재정지원을 제한한다 정도로 하고 세부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방안 정도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건은 오늘 심의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지난 회의 때 심사해서 잠정적인 결론을 낸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 체육계 인권침해의 정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로 명시하고, 그리고 현장점검, 정보시스템, 실태조사 시에 자료제출 협조는 요청 대상 기관을 명확히 하는 것.

특히 6번 실태조사에서는 장관이 실태조사 결과를 통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담요원의 명칭은 현행 인권감시관에서 인권보호관으로 변경하는 내용.

그리고 8번 인권침해 등 사건 관련 정보제공에서 신고자가 동의한 범위 내로 명확히 해서 공개·보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윤리센터가 체육단체에 징계요구 시 입증자료나 조사 기록을 제공하는 경우도 필요한 범위 내로 명확히 제한을 하는 내용.

그리고 9번 윤리센터 조사결과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전에 조사결과를 당사자에게 7일 내 통지하고 그리고 이의신청에서는 피신고자는 제외하고 신고자와 피해자가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도 이의신청이 남발되거나 남용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윤리센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이의신청 결과를 90일 이내에 통지하는 내용, 지난번 위원님들 회의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위임을 문화체육관광부령, 시행규칙으로 했었는데 현행 법령을 보면 윤리센터의 정관이라든가 임원 등 기구들이 시행령, 대통령령에 있기 때문에 이를 대통령령으로 동일하게 하는 걸로 담았습니다.

다음 10번 윤리센터 피해자 보호조치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였고요.

11번 장관의 징계 등 조치요구권에서 조치요구 범위는 현행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에 대해서 보고,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까지 확대하고 조치요구 유형도 현행 징계요구에 대해서 권고와 시정명령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12번 조치요구에 대한 체육단체의 결과보고는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포함하도록 하고 그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장관이 보완요구를 하는 내용, 윤리센터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습니다.

그리고 윤리센터의 조치요구 절차가 징계 등 조치요구가 현행은 윤리센터는 장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이에 추가해서 장관과 사전협의를 한 경우는 제한적으로 윤리센터에서 체육단체에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4번 조치요구 시 징계유형을 심판이라든가 지도자, 선수 등 징계 대상별로 세부적으로 하자는 개정안의 내용이었으나 이는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법에서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만 명시해서 구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의 15번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지 않기로 한 사항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기관 명칭을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하는 것은 기능을 너무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괴리가 있다는 측면 그리고 피해자 보호조치 비용을 피신고인에게 상환청구하는 내용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될 개연성 그리고 기금 용도에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은 현행 조항과 중복된다는 측면에서 이 세 꼭지는 반영하지 않는 걸로 논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전문위원과 의견 같습니다.

재심의요구 관련해서는 지난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단체 의견수렴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수현 위원** 우선 질문 좀 하나 해 보면 장관이 징계를 요구했는데 체육단체가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지금 징계요구를 했는데 아예 응답을 하지 않은 게 한 38% 이상이고요.

○**박수현 위원** 38%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징계요구했는데 아예 반응이 없는 게 3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재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꼭 필요합니다.

○**박수현 위원** 우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것이 말씀대로 개정안은 장관이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체육단체가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징계요구가 있다고 해서 체육단체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요구를 이렇게 38%씩이나 무시하는 상황도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경우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징계 재심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90일 이내 재심의 처리 및 보고의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균형을 잡으려고 한 노력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90일 이내 재심의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절차 진행의 신속 측면에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의견을 좀 내고 싶은 것은 이 재심사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이를 한정하는 표현으로 들어간 이 부분, ‘체육단체의 징계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가볍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모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명확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대체로 법조문에 보면 ‘현저히 가볍거나’ 이런 말들이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의 ‘가볍거나’를 ‘현저히 가볍거나’로 이렇게 조금 더 구체화된 표현을 넣는 것이 어떨까 이런 것이라고요.

또 같은 이유로 절차 부분에서도 ‘절차적 하자’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명확한, 상징적이겠으나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표현을 좀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위원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김재원 위원**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 심사 때 조치요구 미이행 체육단체에 재정지원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국회의 예산권을 침해하는 부분과 함께 단체의 장이나 아니면 이사회에서 잘못한 부분을 징계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체육단체에 속해 있는 체육인들과 그다음에 선수들의 불이익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 삭제를 요청드렸었습니다. 의견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난번에 염려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제한 가지고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재정 부분으로 제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반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위원님, 체육국장입니다. 이것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유사 입법례들이 좀 있는데요. 사립학교법에 보시면, 별지의 9페이지를 보시면……

○김재원 위원 타 법을 인용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단체들이 지금 실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를 안하고 자기들끼리 좀 솜방망이 처벌을 했을 경우에……

○김재원 위원 굳이 징계를 하셔야 한다고 한다면 체육단체의 장과 이사회까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재정지원 제한에 대해서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저도 좀 얘기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단체장이나 이사들을 징계했을 때 징계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징계를 이행 안 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단체에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걸 이행 안 했을 때, 우리는 단체장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것을 협회에서 진행 안 했을 때 그냥 놔둡니까?

○김재원 위원 그 부분이 입법, 의안을 내신 의원님과 문체부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선수들이나 체육단체에 속해 있는 그런 일반 생활체육인들까지 다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장이나 이사회가 썩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까지, 이사회의 결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다른 부분의 사람들까지 다 피해를 봐야 한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의견과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단체의 장이나 이사회가 말을 안 듣는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방법을 새로 생각을 해 주시고, 재정지원의 제한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반대의사 표명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저 또한 반대의견이기는 한데,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이게 끝나지 않을 논쟁이 될 것 같아요.

○김승수 위원 저번에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 가지고, 오늘 논의 결과를 정리한 내용들을 보니까 그래도 대체로 정리가 좀 잘 된 것 같고요.

장관의 재심의요구 결과에 90일 이내에 조치해서 보고하도록 90일 날짜를 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90일 좀 긴 것 아닌가요, 이것? 이미 다 심의한 내용들 가지고 재심의인데 굳이 90일 이렇게 길게 줄 필요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일단 다 기본적으로, 심의요구를 했을 때 처리 절차가 일반적으로 90일인데요, 그것은 일반적인 기준을 따른 부분들인데 좀 빠른 처리가 필요하면 당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인 처리 절차를 존중해서 90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수 위원 밑으로 죽 가서, 이의신청에 피신고자는 제외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항상 보면 조사하는 것이 쌍방 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조사결과에 대해서 피신고인, 신고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도 충분히 불복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제외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부가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가 들어갔을 때 결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징계요구 결정을 하는 경우와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피해자나 신고자가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신고했을 때 스포츠윤리센터가 기각하는 경우 이 경우에 이의신청이 있는

거고요. 피혐의자, 가해자가 징계요구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은 체육단체의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다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에도, 검찰이 불기소처분했을 때 피해자나 신고인은 이것에 대해서 다투 수 있지만 가해자인 경우에는 재판 가서 다투는 법리와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도 어쨌거나 가해자도, 각급 체육단체에서 징계 의결할 때도 어쨌거나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결과를 굉장히 신뢰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징계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나중에 재판을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여러 가지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굉장히 가해자가 잘못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그게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무고라든지 음해에 의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던 경우도 실제 사례들이 좀 있었잖아요, 보면. 그런 경우에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은 여기 재심의까지도 제한당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거든요,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이 부분은 사실 가해자까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인권침해가 있는데 계속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계속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되지 않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그런 쟁송 절차에 있어 가지고 쌍방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일단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한 1~2년 정도 원래 센터에서 내린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실제 징계의 차이를 좀 비교해서 가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면 다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저도 김승수 위원님하고, 금요일 날 제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법과 다르게 또 음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피해자, 가해자를 다 함께 저희가 받아 줘야 된다라고 저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김승수 위원** 실제 사례들이 또 꽤 있어 왔어요, 그런 사례들도.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일반적인 절차들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쟁송 관계에서 다투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절차를 따르고, 말씀하시는 우려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한 1년 정도 윤리센터에서 나온 결과와 실제 징계결과를 비교해서 가해자가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이 조항들을 추가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면 앞서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재정상에 불이익을 주면 실제 잘못한 사람은 장이거나 가해자인데 그로 인해 가지고 그 협회,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까지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 그것 굉장히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각종 체육단체, 협회 임원진의 구성이 회장이 임명되면 거의 자기 사람들로 채우기 때문에 다른 쪽의 징계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도 징계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요구했던 그런 중징계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경징계나 그 이하의 징계를 주는 이런 사례들이 워낙 흔하게, 아까 38%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들

을, 개정안들을 논의하는 건데 그렇게 자기 편에 대해 가지고 솜방망이 처벌하고 아예 처벌 안 했을 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재정적인 폐널티를 너희 협회에 보낼 수 있다…… 그러면 그 회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폐널티에 대해서 왜 너희들이 잘못한 것 가지고 우리까지 피해를 입느냐, 너희들이 책임지고 물러나거나 징계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강제성 압박을 주기 위한 그런 제도로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인 폐널티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쪽에,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 바로 재정적 폐널티를 중지한다거나 다시 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번에 개정안 논의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항이 이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안 들어가 버리면 똑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현 위원 이것은 한번 저도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진종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일 텐데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어떤 조치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생활체육단체 회장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이 보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마지막의 재정적 보조금 이런 불이익조치에 관한 것들은, 사실은 제 개인적 생각은 그래요. 이런 어떤 많은 수정·보완 요구들을 한번 실행을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만약에 그래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차후에 우리 진종오 위원님께서 이걸 포함한 개정안을 다시 한번 발의하셔서 단계적으로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가 실효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려고 한다 해도 지금 언뜻 보면 체육계 내부에 현재 진행 중인 이런 문제들에 대한, 너무 급하게 우리가 지금 마지막 조치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진종오 의원님 안의 다른 건 다 찬성하고 다 좋고 그래도 되지만 마지막 이 부분 하나만큼은 좀 보류를 해서 한번 지켜보고 시행을 해 보고 그리고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진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포함한 개정안을 다시 한번 발의를 해서 좀 바로잡는 것들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특히 또 김재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다만 또 반대로 좀 생각을 해 보면 종목단체라든지 이러한 잘못 운영된 보조금 집행 방식이 오히려…… 그것은 어떠한 지자체, 어떠한 종목단체 등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되는데, 그야말로 선수와 생활체육인들이요, 치우치게 이어져 온 것들이 오히려…… 그렇게 공평하게 하지 못한 것, 좀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현장에서 하는 생활체육인들이 조금 더 불편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예, 그 부분 고려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공평하게 배분이 되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체육

단체, 종목단체의 장이나 아니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보조금을 배분을 한 것 일 텐데 그 보조금에 대한 배분 권한은 결국은 이사회와 그 단체장에 있는 것이고, 체육 단체에 속해 있는 그 선수들이나 아니면 생활체육인들은 거기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아무 의사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것들이 고루 배분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생활체육인들이나 선수들이므로 그렇게 하자는 얘기인데 기존에 의사결정 권한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사회나 체육단체장에 의해서 불이익을 더 받게 된다면 그 종목단체나 체육단체는 더 힘들어질 게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같은 것들을 여기서 아예 제한을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체육단체의 장이나 아니면 이사회에 갈 수 있는 정계안을 마련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차관님께서 선수생활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도 지원금이나 보조금, 국가에서 내려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도움이 없이는 체육단체들이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체육단체장이나 이사진들이 그렇게 해서 꿩꿍이로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해서 한다고 해서, 그 종목이 자칫 잘못하면 3년 동안에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제 말씀은. 기업의 지원을 일단 빼고요.

○ 진종오 위원 하나만 좀 짧게 먼저 얘기드릴게요.

김재원 위원에게 조금의 설득을 시킨다기보다도 말씀을 드리면 재정지원 제한이지만 재정지원을 제한한다고 해서 그 종목이 안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종목의 특별한 활동에 추가적으로 대한체육회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지 그 종목 자체가 아예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지원 안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하고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차라리 다른 방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거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그동안 이게 잘 이루어졌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수현 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이나 이런 등등의 공평성 문제는 여기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굉장히 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치요구 미이행 시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논의를 벌여 놓으면 굉장히 더 어려워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전문위원님, 이 심사자료에 보니까 이런 유사 입법례 설명에 없던데 혹시 자료 찾아 보셨습니까?

○ 전문위원 전완희 재정지원 중단요?

○ 박수현 위원 예.

○ 전문위원 전완희 그것 9페이지에

○ 박수현 위원 있습니까?

○ 전문위원 전완희 예, 9페이지는 학교에 대한 겁니다. 학교니까 체육단체하고는 예산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대신 학교에 대해서는 중단·배제를 명확하게

한 입법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소위 때, 예술단체에 대한 입법례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배제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저는 김재원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거든요. 그러니까 일선에서 이런 일을 해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배드민턴협회장이, 그분이 협회장을 계속 안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겠다고 저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 배드민턴협회에 그동안 부가적으로 주어지던 혹은 정부가 지원하던 것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따로 구체화해서 일부를 좀 제재를 함으로써 그 단체가 건강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 말고 이런 걸 제재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으면 그게 대체입법이 가능할 텐데 지금 마땅한 그런 수단이 없어서……

학교같은 이런 데는요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그 학교에다 제재를 하고 이런 게 그 학교를 전체적으로 학교답게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개 모든 기관·단체가 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지요. 인사조치를 하거나, 그런데 인사조치가 안 되면 거기에 다른 불이익을 주는, 특히 그건 민간단체기 때문에…… 국가기관 같으면 그냥 인사조치를 해 버리면 끝인데 그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일종의 압력이 되는 거지요. 이거는 하방압력도 되고, 아래 회원들의 압력도 되고. 그래서 그 단체가 더 건강해지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 단체장이 잘못했는데 왜 협회 임원들이 그 부담을 져야 되냐, 재정지원을 줄여서, 재정지원을 감축해서 그 피해를 받아야 되냐 그렇게 하면 아마도 국제적인 관계에서부터 동네 계모임까지 이게 다 제대로 운영하는,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른 대체수단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서 저는 그건 좀 유연하게 검토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절대 안 되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지요.

○진종오 위원 그리고 단체장이 잘못했을 경우에 대의원총회라든지 이사회를 열어서 단체장을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안 한다라는 규정이 만들어졌을 때 이사회라든지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불이행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문체부에서 대통령령을 만들 때 그때, 여기다 위임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조건을 잘 정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그래서 지금 시행령에 이 재정지원을 중단할 때, 제한할 때 아주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그렇게 위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너무 또 그렇게 한정적 범위 내에서 하면 효과가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그건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저희가 이 조항을 넣었던 주된 이유가……

○소위원장 임오경 잠깐만, 위원님들 의견을 마지막까지 더 들어 주시고……

배현진 위원님.

○배현진 위원 방금 민형배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육단체장을

통상적으로 지역에서든 이렇게 봤을 때 이분들은 예를 들면 인적 네트워크, 자본력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추신 굉장히 파워풀한 분들이 이미 많으세요. 오랫동안 그 종목단체장을 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다수이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치 미이행에 대한 제한이 없을 때에는 그 이후에도 정말 뻔뻔하게,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협회장의 사례를 드신 것처럼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지금까지 너무 많아 왔기 때문에 아마 진종오 의원님이 이 법을 만드신 것 같고.

그 법을 저희가 시행하게 되면 공포하고 난 다음에 유예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모든 법은 유예기간 동안에 실제 제대로 작용하는지, 부작용이 있는지 등을 두루 살펴서 시행에 돌입하게 되는데, 그게 일반적인 그것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문체부가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하도록 이거를 잘 모니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단체장의 부적절한 생각이나 처신 때문에 그 종목단체 전체가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염려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세부사항 시행령 위임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완전히 보조금 지급을 끊는다 아니면 제한한다라는 실제 조치가 집행되기 전에 문체부 내에서도 그 종목단체 자체에, 이사회를 열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게 하는, 자정할 수 있는, 단체장이 거부하더라도 그것을 자정시킬 수 있는 후조치의 기회를, 조금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게 된다면 그 사례를 참작해서 보조금 집행에 관한 그런 것을 조금 유예하거나 아니면 철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시행령상에 만들어 주시면 이런 법안들에 대한 염려를 조금 덜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지역에서 많은 종목단체, 시·광역단체 그다음에 저희 지역단체들, 많은 종목단체장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저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자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께서 좋은, 저에게도 영감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공포까지 시간들을 가지고 볼 수 있다라는 말씀 감사하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제가 좀 논의해 보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3년 이내, 물론 3년 이내니까 1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3년이라고 하는 상한선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좀 과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른 입법례 같은 경우에 3년 이렇게 상한선이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3년이라고 한 이유는 위원님 뭐지요, 이게?

○**진종오 위원** 이게 왜냐하면 1년, 2년 이렇게보다 3년 이내라고 한 거는 불이행 종류에 따라서 약간 좀 격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광범위하게 둔 부분이고요. 딱 1년, 2년 이렇게 정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해야, 또 다음 올림픽 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클 때문에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정하게 한 종목단체를 저희가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84개 종목단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하는 부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수정안보다는 오히려 진종오 의원이 낸 ‘법령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불이익을 줄 수도, 요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넣으면…… 기간을 좀 수정안에서 배제를 하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과태료를 중과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넣으면 어떻겠어요?

이 수정안은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무슨 여기 기관장들이 계속 계속 들어가는데 지금 이 위를 보다 보면, 5항을 보다 보면 ‘제2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조치요구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관 및 단체’, 이 기관 및 단체는 체육단체를 말하는 거니까 불이익을 요구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만 해 놓으면……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과태료 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새로이 개정하는 경우로 해야지……

○**소위원장 임오경**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3년 기간들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 그러니 좀 간단하게……

○**배현진 위원** 수정안이 디테일하게 나와서 그런 거잖아요?

○**소위원장 임오경** 예, 기간은 넣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배현진 위원** 진종오 의원님의 원안대로 하고……

○**소위원장 임오경** 아니요,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의견도 경청을 다해 주셔야지요.

○**배현진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소위원장 임오경**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과태료라는 말씀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그건 빼도 상관이 없고요.

○**배현진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그건 다른 말씀이고요. 제가 이해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3년 이내의 재정지원 제한,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은 진종오 의원님의 원안대로 하고 그것은 대통령령이나 이런 것으로 살펴보자고 제안하시는 거 아닙니까?

○**소위원장 임오경** 예. 지금 여기 진종오 의원이 낸 것, ‘법령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딱 하면 간단명료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진종오 위원** 3년을 빼자라는 얘기이신가요?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니까 진종오 의원님 안에는 지금 3년이 없고 수정안에 3년이 들어와 있거든요.

○**박수현 위원** 진종오 의원안에 3년이 없어요?

○**소위원장 임오경** 예, 여기 정부 수정안에 들어와 있어요.

○**전문위원 전완희** 별지 자료 6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러면 이러한 안들은 저희가 다 위임해서 시행령 안으로 고려하는 사항들이 되는 겁니까, 추후에?

○**민형배 위원** 잠깐만요.

이 3년, 2년, 1년 이걸 정해 놓지 않으면 무한대로 해도 누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시기 제한을 해 놓는 게 합리적인 거지요. 2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 1년으로 하든 해 놔야지 안 해 놓으면 이것 가지고, 가령 여기 미우면 계속 재정적 불이익을 줘요. 그러면 문체부장관이 축구협회장 미우니까 계속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치는 일종의 단서조항 같은 거여서 이 제한적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몇 년으로 하든 있어야 돼요. 없으면 계속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방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기거나 늘리거나 하는 건 맞지만 이 기한 자체를 없애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여기 3년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들은 저희가 무한대로 늘려서 불이익을 오랫동안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진종오 의원님이 주신 부분의 불이익이라는 부분이 명확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보조금의 제한이라고 해서 불이익 자체를 좀 더 구체화시킨 부분들입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지금 이 논리를 우리가 계속 너무 길게 하고 있는데 자료 5쪽에 보면 이미 정리해 놨잖아요. 타당한데 불이익조치를 지금은 할 수 없다, 징계조치를 이행을 안 해도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징계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해 버려, 그것 어떻게든 제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제재 수단이 정부 입장에서 보면 혹은 체육회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보조금밖에 없어요. 다른 제재를 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갖고 있는 유일한 수단인 보조금을 가지고 핸들링을 해 보겠다라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대충 하겠다는 게 아니고 따로 기준을 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어서 이렇게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아까 김재원 위원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이게 전체 회원들한테, 그 단체 전체에 불이익이 가는데 그걸 그대로 수용할거나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건 대통령령에서 잘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김승수 위원 김재원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 지적 잘하신 거고. 그래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우리가 시행령을 만들 때 세세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민간경상보조, 체육단체가 아니라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위법 부당한 집행이 있거나 집행이 굉장히 부진할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그다음 연도 예산 책정할 때 폐널티를 줘 가지고 삭감해서 예산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시행령을 만들 때 실제 협회 회원이나 선수들한테 가는 사업비 예산에 대한 삭감 이런 것들은 최대한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운영비예요, 그러니까 주로 운영비 지원도 한다는 말이에요, 종목단체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한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정도 시행령에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면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도 대체적으로 이런 조항이 없으면 다른 제재조항, 징계 이게 아무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법에는 이 정도로 근거 조항만 해서 통과를시키고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김재원 위원의 걱정이 없도록 그 내용을 계속 협의해서 하도록, 그런 식으로 양해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민형배 위원 체육국장님, 한 가지 궁금한 거요.

지금 이 종목단체들이나 체육단체들 중에 보조금 의존도가 대략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운영비에서? 그걸 알아야지 지금 이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종목단체마다 다른데요……

○민형배 위원 대략이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5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으로.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그거 없어도 단체는 굴러가네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민형배 위원 원래는 보조금이 없이 굴러가야 정상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임오경 종목단체들이 다 달라요.

○진종오 위원 그게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축구협회 같은 데는 적을 거고 골프협회 같은 데는 거의 자립 할 거고, 보조금이 별로 없을 거고.

○진종오 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전지훈련을 하는 데 보조금 지원해 주기도 하고, 운영 자체의 금액을 손댄다라는 건 아니니까요.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자체적인 운영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데 뭔가 다른 추가적인 사업을 하고 그럴 때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라진다고 그래서 갑자기 그 협회가 기능을 정지당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해 가지고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시행령에서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김재원 위원님의 그 염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행령 만들 때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김재원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재원 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고 진종오 의원님 안을 봤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걱정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고.

오늘 수정안을 보니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이라고 말씀하셨고, 올림픽 주기가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운영 자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라도 어떠한 행사를 벌인다든지 이랬을 때 꼭 그 운동경기 종목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을 때는 그 보조금이 당연히 또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인데 3년 이내의 범위라고 한다면 굉장히 긴 범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까놓고 얘기하자면 배트민턴협회 회장이나 아니면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나 이런 경우에 장관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2년 6개월까지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너무 장기간의 제한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저는 1년 6개월 이내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에 위임되면 아마 크게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첫 번째가 최대 3년이라고 해서 한 번에 3년을 하는 게 아니고 통상 시행령에 이런 조치를 만들 때 그 제한 비율을 1차에는 경고하고 2차에는 10%, 3차에는 30%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요구를 했는데 안 들었을 때, 첫 번째 안 들었을 때는 경고 정도, 두 번째는 몇 % 제한 그다음에 또 몇 개월 제한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전 개월과 퍼센트가 있어서 그 요구사항의 위반 횟수에 따라서 점점 늘어 가는 거라 예를 들어 다섯 번째까지 요구했는데 안 들었다 그 경우에는 3년과 100%가 되겠지만 1차, 2차 때는 되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라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법안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일단 수용을 하고 시행령에서 그렇게 정하도록 하고 오늘 통과를 시키게 되면 이후에 시행령을 정할 때 이미 그때는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하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지금도 대한체육회 산하에서는 관리단체로 지정을 해서 업무를 대한체육회에서 보는 차원도 있어요. 반대로 지금 대한체육회를 우리가 징계를 할 때 이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 스포츠윤리센터나 문체부에서 대한체육회를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다른 84개 종목단체들은 이걸 관리단체로 해서 대한체육회에서 관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프로가 이 10% 지원을 안 받겠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목단체가 너무나 천차만별이고 그다음에 단증을 가지고 있는 킥복싱, 태권도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배드민턴, 예를 들어서 회원수가 너무 많은 곳은 정부의 보조금 없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단체가 너무 달라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는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재정지원 제한은 보류하면 어떻겠어요?

○배현진 위원 아니요, 저는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논의가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스포츠계의 이를테면 성범죄, 폭력 이런 특수한 범죄 사례가 신고 됐을 당시 그것에 대한 관리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처벌 또 징계에 관한 논의인데 실제 각 종목단체 예산은 문체부에서 직접 내려가고 있지 않고 지금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다 배부되고 문체부는 말씀하신 대로 일부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징계안에 대한 특수한 사안을 우리가 종목단체 전체의 경우로 놓고 상정하면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문체부를 좀 믿고, 문체부가 지금 체육계를 잡도리하려고 이것 하자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썩은 부분을 우리가 잘 치료해 가면서 지원을 늘리고 잘해 나가자라고 하는 취지이고 거기에 대한 법안이기 때문에 좀 믿고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시행령에 저희가 염려한 모든 부분을 담아서 꼼꼼하게 잘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김승수 위원 프로구단에 대해 가지고는 정부 예산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정부에서 관여할 여지가 없어요,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이외에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종목별 단체 중에서도 보면 전혀 정부 보조금 안 받고 자기들 예산으로만 하겠다는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이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뿐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일반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도 부정행위가 있으면 그 보조금에 대한 폐널티를 준다는 말이

지요. 이번에 몇 개의 종목별 체육단체에 대해서도 저렇게 회장들이 뻔뻔스럽고 부당한 행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부 예산이 그대로 투입되도록 방치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엄청나게 끓어올랐던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법안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방장치를 만든다는 그런 취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현진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숙현, 안세영 이런 선수들이 없었으면 국민 누가 그런 종목단체들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인지를 하고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문체부가 갑이고 지금 종목단체가 을처럼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현장체육계에서는 체육단체장과 임원진 그리고 종목단체라는 조직이 갑이고 일개 선수들은 정말 을 중의 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을 조금만 문체부를 믿고 법안을 한번 통과시켜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그리고 동의하는 바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어쩌면 배드민턴협회나 축구협회 그다음에 대한체육회 거기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워하는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50% 운영비 지급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총 종목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소위원장 임오경** 83개.

○**김재원 위원** 83개의 종목단체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법은 어느 종목단체에만 한정하지 않고 그 종목단체를 전부 다 포함해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배현진 위원** 김재원 위원님의 말씀을 저는 완전 납득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체육단체, 특히 저희가 알 만한 대기업 회장님들이 하시는 그런 종목단체들 말고 정말 이름 처음 들어 보는 생경한 종목단체의 장들이 어떤 방식으로, 특히 지역별로 갈수록 광역단체나 이런 데로 지정되는지는 아마 먼저 문체위에 계셨던 위원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실제 대한체육회장이나 상급 종목단체장의 영향력이 거의, 지정하듯이 당신 하세요라는 식으로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은 인맥과 자본과 이런 것을 많이 가진 그 지역이나 그 분야의 갑 중의 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선수들이 피해 사실을 고발했는데 이게 단체에서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나몰라라 뭉갤 경우에 그 이외에 문체부의 어떤 조치도 없고 다른 단체에 대한 ‘저렇게 하면 별 받는다’라는 어떤 전시적인 효과조차 없다고 하면 그 알 수 없는 80개의 많은 단체 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 을 중의 을인, 돈도 없고 단지 운동을 해 왔을 뿐인 그런 어려운 선수들을 누가 구제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체부를 한번 믿어 주시는 게 어떨까 다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의 열띤 의견 토론에 이건 마지막으로 보류를 해서 마지막에 다루는 걸로 하고 저희가 계속, 시간관계상 오늘도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수현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진종오 위원** 이거를 보류를 할 필요가 없이, 얘기가 다 나왔는데 굳이 이걸 꼭 보류를 해야 하나요?

○**소위원장 임오경** 아니, 의견 차이가 아직도 충돌이 있기 때문에……

○**진종오 위원** 의견 어느 정도 수렴하셨잖아요. 수렴하셨고 지금……

○**소위원장 임오경** 지금 수렴을……

○**박수현 위원** 제가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을 한번 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소위원장 임오경** 예.

○**박수현 위원** 저는 김재원 위원님 안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서 이것만 빼고 통과를 시켜 놓고 한번 해 보자는 안도 냈었는데요. 그리고 3년이 좀 과하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배현진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령을 마련할 때 이 부분의 저희들 우려를 충분하게 담아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김재원 위원님이나 저나 이런 우려를 제시한 위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취지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범 크게 다른 쟁점이 있는 거 아니니까 미루지 말고 그냥 통과를 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김재원 위원님 의견 최종적으로 듣겠습니다, 저는.

○**김재원 위원** 범위만 2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박수현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에 따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진종오 위원** 저는 오히려 정부 측의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3년 이내에, 그러면 이게 운영비 쪽에서 문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 맞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리고 3년 이내라고 정한 거니까, 이내니까 다 다릅니다. 이게 무조건 3년을 채우는 게 아니라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 있으니까……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맥시멈은……

○**진종오 위원** 맥시멈 3년이니까……

○**김재원 위원** 맥시멈은 3년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진종오 위원** 그게 변동이 되는 거니까 3년이라고 꼭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재원 위원** 그거는 그때그때 적용할 때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김승수 위원** 김재원 위원 동의했으니까 2년 이내로 해 가지고 통과시키고 운영하다가 2년 이내로 하다 보니까 문제 있더라 하면 또 이렇게……

○**김재원 위원** 그럴 수 있지요.

○**민형배 위원** 4년으로 늘리게요, 그러면.

○**김승수 위원** 아니면 2년 너무 길다 할 수 있으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우려를 반영해서 저희가 2년 이내로 하고요. 법을 운영해 보고 필요하면 다시 또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거 하기 전에요, 이게 지금 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나온 이슈들인데…… 박지영 이사장님, 지금 이런 정도 하면 됐나요? 빠진 게 뭐니까?

○**스포츠윤리센타이사장 박지영** 위원님들께서 스포츠 인권침해나 스포츠비리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해 주시고 좋은 법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에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그러면 안 되지요. 지난번 국감 때 그러셨잖아요, 지금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중에 없는 게 있다. 조정기능이 없다면서요?

○**스포츠윤리센타이사장 박지영** 예, 조정기능은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조정기능이 없으면 그 제도 운영이 굉장히 경직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조정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스포츠윤리센타이사장 박지영**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관련한 법안은 올라오지 않았어요.

○**스포츠윤리센타이사장 박지영**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제가 그거는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마는 조정기능까지 포함시킨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됐어요?

○**스포츠윤리센타이사장 박지영** 예?

○**민형배 위원** 센터 운영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제가 이 법안을 만들 때 초기에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들어갔던 법안 중에 빠진 게 특별사법경찰권이 지금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조사를 할 때 약간 관계된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고요.

○**민형배 위원** 그게 왜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지금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타이사장 박지영** 저희가 지금 조사권만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거는 안 돼요. 센터가 특별조사권을, 사법경찰권을 가지면요 이게 또 다른, 이거는 조사권으로 되고요. 그게 필요하면 그때는 경찰한테, 검찰에 조사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풀어야지 자체가 스스로 그런 강제적 조사권을 가지려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더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스포츠윤리센타이사장 박지영**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원래 초기에 얘기했던 게 중재권한하고 수사권인데 중재권을 해 주시면 그거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까지 같이 검토는 해 볼게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스포츠윤리센타이사장 박지영**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오늘 특별히 스포츠윤리센터 박지영 이사장님을 배석시켜서 의견을 저희가 듣고 있는데 필요한 입법 관련돼서는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의원실들을 찾아 방문하셔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윤리센타이사장 박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이 시행령을 만드실 때, 제가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종목단체가 83개라고 했지 전국에는 9400개가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이 9400개 종목단체를 다 감안하셔서 시행령에 잘 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민형배 위원** 종목단체가 9400개예요? 동네 지회 이런 거 다 해 갖고?

○**소위원장 임오경** 예, 이게 시군구, 시도 체육회가 다 있어 가지고 9400……

○민형배 위원 그거는 종목단체의 한 브랜치들이지요.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니까 시도에도 그렇게 다, 시군구에도 다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오 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진행하시지요.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민형배 위원 그러면 2년으로 해서?

○진종오 위원 예, 2년으로.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없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면 다음 5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의원의 법안입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 별지 말고 본 자료로 하겠습니다. 지난 소위 때 자료와 동일합니다. 본 자료 8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소위 심사 두꺼운 본 자료 8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의원안은 국민체육진흥계정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 재원으로 재조성하여 체육진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투표권 발행 사업 전담 자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 재원으로 재조성하여 체육진흥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2001년부터 시행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이 2022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이 아닌 공단 100% 출자회사에서 위탁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수탁사업자 위탁계약기간은 내년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1일부터는 개정안에 따라 100% 출자회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현행법에 따라 전담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진흥기금이 아닌 공단 법인회계에서 설립 자본금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수익금도 진흥기금으로 조성하지 못하고 공단의 미처분 잉여금으로 적립하거나 배당하는 등으로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개정안처럼 기금에서의 출자 근거 및 수익금의 기금으로의 재조성 근거 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입법취지에 공감하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재원 위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회사 설립 및 채용, 각종 계약 등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므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자회사 설립 이전에 필요한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체부의 개정안 부칙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체부에 부칙 관련 내용을, 혹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 준비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준비되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부칙을 말씀드릴까요?

○김승수 위원 부칙 설명하기 전에, 현재 지금 위탁했던 거를 직접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추진 경과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고요. 그 부칙 이야기를 해 주세요.

○소위원장 임오경 제가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공영화법을 2021년 이상현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그 당시 온라인 경륜법하고 함께 2021년 7월에 저희가 통과를 시켰어요. 그렇지요? 그 전에 5년에 한 번씩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2020년 6월부터 스포츠토토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이 민간업체가 25년 6월이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공영화를 무리 없이 신설하기 위해서 자회사 설립 근거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 놓는 법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민형배 위원 이 자료 좀, 잘 아시는 분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투표권 현황을 말씀해 줘 보세요. 국장님 하실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매년 매출액은 한 6조 정도 되고요.

○민형배 위원 6조. 몇 종류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토토 종류가 종목이 지금 다섯 종목이고요.

○민형배 위원 뭐뭐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골프. 씨름까지 있는데 지금 씨름은 실제 발행……

○민형배 위원 골프는 어디서 그런 게 나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LPGA하고 PGA 경기에서 합니다.

○민형배 위원 그거 할 때 갤러리들이 들어갈 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외부에서 일반인들이 거기에 누가 우승을 할 건지, 몇 홀에……

○민형배 위원 그걸 맞출 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그때……

○민형배 위원 축구는요? 축구도 그런 게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축구는 국내 경기하고 해외 경기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해외 경기도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그래서 해외발매분이 따로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렇게 해서 골프, 축구……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야구, 배구, 농구.

○민형배 위원 야구, 배구, 농구. 다섯 개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민형배 위원 그게 연간 매출이 6조가량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6조 정도 됩니다.

○민형배 위원 6조. 그중에 제일 많은 게 어디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현재 축구가 제일 많습니다.

○민형배 위원 축구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축구가 지금, 종목별로는 제가 지금 자료를……

○민형배 위원 그거 종목별로도 있어야지.

그려면 그게 몇 퍼센트가 우리 기금으로 오고 몇 퍼센트가 자체……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그중에 4조가 환급금이라든지 비용으로 처리가 되고요 2조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사업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2조 정도가?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민형배 위원 4조는 거기 비용하고 배당금으로 돌아가고?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맞춘 분들한테 다시 배당금으로 돌아가고요.

○민형배 위원 그러면 2조 정도가 연간 체육진흥기금으로 오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그중에 1조 8500억이 저희 내년 예산입니다.

○민형배 위원 왜 그렇게 적게 잡았어요? 혹시 모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나머지 부분은 공적자금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들어가고요. 실제 내년 매출로 잡힌 건 1조 8500억입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저번에 우리가 결의안 냈잖아요, 지방에……

○민형배 위원 그러자고 했지요.

○김승수 위원 그런데 그게 첫째는 스포츠토토 매출 규모를 더 늘릴 수는 있어도 사행사업 매출 총량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못 늘리는 부분이고. 또 이게 지금도 충분히 적립금이 계속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에 따라 가지고 쓸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민형배 위원 지난번에 적립금이 2조 정도 쌓여 있다 그랬나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여유자금으로 2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2조 정도 쌓여 있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1조 8500억 정도를 우리가 기금으로 쓸 수 있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설명을 좀 해 주고 해야지.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안 부칙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부칙 필요성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칙 말씀드리면……

○김승수 위원 필요성이 경과잖아요. 어떻게 지금 의견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부칙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이것은 21년 1월에 통과가 되었고요. 기존의 자회사 산업개발은 시설만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아서 새로운 자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 때……

○민형배 위원 기존에 있는 산업개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한국체육산업개발이오.

○민형배 위원 체육산업개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지난번에 국감 때 대표가 오셨던 그 체육산업개발이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 그래서 설립 이전에 모회사이자 발행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일이 오래 걸리는 채용 및 계약 절차 등 필요한 사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서 부칙을 말씀드리면 제2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25조제1항의 주식회사가 설립되기 전까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고 주식회사가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해당 사무를 주식회사에 인계하여야 한다'입니다.

○민형배 위원 잠깐만요, 이게 주식회사 형태가 괜찮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현행 법률에 주식회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형배 위원 아예 주식회사로 해라?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게 좀 이상한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산업본부장 최규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최규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법안이, 최초로 법안 발의할 때 이상현 의원께서 발의를 하시면서 체육진흥공단이 100% 출자한 주식회사가 때문에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주식은 양도, 판매 이런 게 불가능해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산업본부장 최규철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래야지, 그런 전제조건이 있어야 주식회사 형태가.....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면 다음 연번 6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융자지원 대상의 체육용구생업체 등 추가, 임오경 안 제17조제2항·제3항 및 제22조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88쪽 되겠습니다.

임오경 의원안은 기금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현행 체육용구 등 생업체는 우수업체에서 전체로 확대하고 체육시설업체도 일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서 전체 체육시설 설치·운영업으로 확대하며 체육용역업체도 경기·마케팅·정보업 등에 제한하던 것을 체육 관련 용역·서비스 제공업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스포츠업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91년부터 추진 중인 스포츠기업 대상 금융지원 사업의 경우 융자지원금액의 약 98%가 체육시설업체 지원에 편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다만 안 제17조제3항 3호에서 '용역과 서비스를 하는 업'으로 나열을 했는데 현행 법문에 표현된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으로 수정하는 게 체계·자구로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과 수정안의 조문은 9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개정취지에 공감하여 전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승수 위원 좋은 법안입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91페이지 통계자료 보면 서비스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행업도 있고 또 마케팅업도 있고. 그 수치가 전체 여행업 중에서 스포츠 관련 여행업을 하는 업체 수치인가요,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확실하게, 명확하게 스포츠…… 똑같이 스포츠 여행업을 하더라도 일정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 잘 좀 정리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의견 없으시면 저희 연번 7번으로 넘어가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에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 추가, 임오경 의원안 제36조제1항제6호 신설을 위한 법안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소위 자료 94쪽 되겠습니다.

임오경 의원안은 공단의 사업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2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산업에 총 2559억 등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 관련 조항—36조가 되겠습니다—36조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단의 사업 조항 36조에도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면 스포츠산업 지원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입니다. 조문은 97쪽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승수 위원 법의 체계를 맞춘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런데 그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커버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어서요 이걸 근거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안 넣어도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명확하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96쪽을 보면 현행 6번, 기타가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제가 봤고요. 그러니까 기타가 있는데 다시 이걸 집어넣으면 그게 더 명확해지나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원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할 수 있는 일들이 1항부터 6항까지 나열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던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배현진 위원 현재 사실 규정돼 있는 법이 있습니다, 동 법상에.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알았는데요. 그걸로 해서 불편함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실제로 이런 일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이렇게 다시 여기다가 추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배현진 위원 선언적인 의미 말고 개정 실익이 무엇이냐……

○민형배 위원 이거 그동안 집행하고 운영하는 데 무슨 의미가 있었냐, 무슨 불편함이 있었냐.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지금까지는 ‘그 밖으로’ 가지고 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기재부 갔을 때……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공단에 있는 규정의 내용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법으로 지금 끌어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사실 이게 사업의 안정적 운영 측면도 있지만 공단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재부 등과 협의할 때, 인력 티오 같은 거 할 때 명시적 근거가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법률에 명시해 놨을 때 실익이 있다, 충분히?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조직 정비라든지……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재로서는 스포츠산업 진흥에 기금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기금을 여기 진흥 사업에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너희들 기능에도 없는데 왜 이 사업을 너희들이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걸 확실하게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민형배 위원 뭐 그런다고 합시다. 내가 보기에는 별로……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의 말씀이 없는 관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거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정부 쪽에 요청할 게 좀 있어서요.

가시지 말고 잠깐만요. 스포츠윤리센터하고 그다음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하고 현황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데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것 플러스해서 2차관님, 1차관 소관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문체위도 마찬가지고. 지금 문체부의 특사경, 아까 스포츠윤리센터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쪽에 도박이라든지 저작권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특사경 수요가 있는 데들이 있어요, 보면. 그 부분을, 문체부 1·2차관의 특사경 수요가 있는 부분하고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같이 정리를 해서 여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민형배 위원 그러면 다들…… 이거 좀 해 주세요.

○김승수 위원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여야 같이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한다든지……

○전문위원 전완희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들으셨지요? 22대가 새로 출범하면서 위원님들이, 상임위가 구성이 되었으니 스포츠윤리센터 현황 및 스포츠토토 투표권 현황에 관련돼서 의원실에 직접 방문하셔서, 또 기회가 된다라면 여야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는 걸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3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제8항부터 10항까지 돼 있는 것, 짧은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 정부 제출안은 이용자 분담금과 원인자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용자 분담금은 사업시행자가 지원시설을 건설할 때 그 비용을 이용자, 주로 입주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이용자가 분담하는 것이고 원인자 부담금은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비용을 원인자—주로 예비 입주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에게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1987년 이후 신설된 이 부담금은 관행적으로 존치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율적 협의, 분양이나 임대차계약 등을 따라 운영되고 있고 개정안은 이 조항을 폐지하여 관행에 따른 자율적 협의에 따라 계속 운영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동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 관련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인 통상적인, 강행적인 부담금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원인자 분담금과 이용자 부담금은 모두 최근 10년간 실질적인 부과 사례가 없습니다. 이용자 부담금의 경우는 최근 3년간 20억 내외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본래적 의미의 지원시설 건설이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을 명목상으로만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과 사례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개정안은 정부가 금년 3월에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18개의 부담금 폐지, 10개 부처 21개 법률 개정의 일환입니다. 문체부 1차관 소관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그 일환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해당 부담금은 부과 실적이 저조하고 또 폐지되어도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 또는 계약으로 비용을 분담할 수 있어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가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 질의답변 부탁드립니다.

○배현진 위원 설명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10년간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부과 사유가 생길 가능성은 없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이미 분양 또는 임대차계약으로 서로 협의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굳이 안 생길 거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

○민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전문위원님, 다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의원님 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의원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안전·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내용은 표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하지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은 동 법의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농어촌민박업의 경우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별도로 서비스위생교육과 소방안전교육 의무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법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 대한 안전·위생교육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른쪽, 안전·위생교육 미이수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은 교육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입법취지에 공감하여 전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 질의답변 부탁드립니다.

○배현진 위원 타당한 법안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좋은 법안, 법안 내용에 대해 찬성을 하고요.

다만 지금 민박업에 대한 법이 나눠져 있잖아요, 도시민박하고 농어촌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는 데 대한 실익이 어떤 게 있는 건지,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민형배 위원 2714개소, 1930개소, 여기에다가 안전·위생교육을 넣어 놓으면 3시간만 해도 이분들이 상당히 불편해질 텐데…… 그러니까 이 의무 대상자들의 불편함과 이것의

시행에서 오는 효율성 사이에 어느 쪽이 더 큽니까? 부담이 너무 크면 이게 그럴 거고, 이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으면……

○진종오 위원 교육을 해도 안 지키는 사람 많을 텐데……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앞에는 지금 규제완화고 이건 규제를 하는 건데……

○김재원 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라 하면 사실상 에어비앤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민형배 위원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김재원 위원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이런 법적인 의무망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거나 아니면 청소업체 같은 곳을 시켜서 청소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사실상 운영자는 거의 신경을 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종오 위원 100만 원으로 정한 기준은 뭐예요?

○김재원 위원 여기 우측 5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민박업자로서 농어촌민박업과 같은 100만 원 이하로 과태료 금액 수준을 정한 것입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교육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거하고 그 교육이 주는 불편함, 교육 대상자들에게 주는 불편함 사이에 어느 게 실제로 더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해야 된다는 당위는 알겠어요, 충분히. 그런데 이렇게 교육 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인가?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무슨 위생검사나 이런 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배현진 위원 에어비앤비가 현행 불법이잖아요.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 업소 자체가 위생검사도 안 해요, 이를테면 보건소에서 이 업소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처음에 지정받을 때 그때는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반 모텔도 3시간 이상 하도록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민형배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분들이 위생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지요. 그게 다른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냐고 여쭙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관리……

○민형배 위원 위생점검 같은 걸 한다면 보건소가 그걸 하고 있으면 관리가 될 건데 완전히 그런 데 다 사각지대예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저희가……

○배현진 위원 현재 여기 등록되어 있다는 도시민박업의 종류가 뭐뭐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도시민박업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흔히 이게 공유숙박이라고 알고 있지만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입니다.

○민형배 위원 어쨌든 외국인관광이든 아니든 도시민박이라고 하는 이 업소들이 다른 어떤 곳에서도 위생점검이나 이런 걸 안 받아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사업정책관 김근호 위생점검은……

○민형배 위원 보건소나 이런 데서 안 받습니까, 지자체 단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사업정책관 김근호 하고는 있는데 전수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수로.

○민형배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상이 되는 데는 받고 안 되는 데는 안 받지.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사업정책관 김근호 예, 그러니까 해당 지자체에서……

○민형배 위원 그거 확인 좀 해 보세요, 얼른.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니까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고……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자신이 그걸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생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사업정책관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다른 곳에서 이미 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굳이 교육이 규제만 되지, 부담만 된다는 뜻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사업정책관 김근호 실제로 말씀하신 검사 이런 게 그것도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민형배 위원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그러면 한옥체험업과 도시민박업에 대한 위생관리가 공중위생관리법에 제외되어 있다면서요, 의무교육 대상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사업정책관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의 그 대상 자체가 아닌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사업정책관 김근호 예, 아닙니다. 법이 그렇게 법체계가 예외를 인정……

○민형배 위원 교육만 안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이런 관리 대상 자체가 아닌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사업정책관 김근호 관리 대상이 문체부로 되어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 참…… 이 법에 따른,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관리가 돼요 안 돼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사업정책관 김근호 공중관리위생법에 예외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민형배 위원 교육은 예외인데 다른 것도 다 예외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사업정책관 김근호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누가 얼른 확인해 보세요. 거기 담당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사업정책과 이나은 담당 사무관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예외 대상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교육뿐만 아니라 점검도 안 한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사업정책과 이나은 예. 점검도 공중위생관리법상으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관광진흥법상 보고·검사의무에 따라서 받고 있고요.

○민형배 위원 그거는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사업정책과 이나은 예. 다만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임의로 지자체에서 판단에 따라서 합동단속 시에 검사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만 받아 가지고 될까,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배현진 위원 이 관리 주체가 문체부예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러니까 가서 위생점검하고 하는 주체가? 아니잖아요, 지자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지자체에서 하는데……

○김승수 위원 아니,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해서 위생검사 이런 것들은 복지부 소관이고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는……

○배현진 위원 보건복지부 소관 아니에요?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광호텔이나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문체부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래서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 관리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고 또 대부분은 실질적인 단속이나 이런 것들은 지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헷갈리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민형배 위원 말씀하신 거는 일반 숙박시설도 그렇지만 또 이런 공용숙박업 그러니까 외국인 민박업 같은 경우에 문체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생 부분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게 일단은 체계상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지.

○민형배 위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느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현실적으로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소위원장 임오경 문체부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민형배 위원 그런데 허가는 나 있어요? 허가는 나 있는데……

○소위원장 임오경 예외로 해 준 거구나, 이게.

○김승수 위원 등록이 되어야지, 외국인……

○민형배 위원 등록은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민형배 위원 희한한데?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그렇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샘플조사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같이 점검도 나가기는 하는데 아주 제한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점검을 하기는 해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사실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사무관님, 1년에 두 번씩 점검해요, 위생점검?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 이나은 예, 문체부에서 주도해서 하는 건 1년에 한 번이고요. 그거 외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또는 지자체에서 기획단속은 1년에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는 해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 이나은 예, 지자체에서……

○민형배 위원 위생점검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 이나은 예, 합니다.

○**배현진 위원** 저 말씀, 설명을 듣고 좀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이 도시민박업의 위생관리를 하는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지요, 원래? 기초단체 등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숙박업의 위생관리를 하는 주무부처가 어디예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전체 숙박업들, 예를 들어서 모텔이나 이런 곳들은 보건복지부가……

○**배현진 위원** 보건복지부고 도시민박업은 별도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예외로……

○**배현진 위원** 별도로 그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럴 리가 없는데?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외를 인정받아서 시행령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김 의원님께서 이걸 법률로 상향하는 안을 발의하신 겁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의무교육 대상인 건 알겠다니까요. 제외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시키자 오케이, 그러면 지금까지 이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은 위생관리나 위생점검 같은 것을 어디서 어떻게 해 왔냐? 문체부가 한 번 하고 지자체는 수시로 하고 그런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직접……

○**민형배 위원** 에이, 알고 말씀하셔야 돼, 이거 다시 확인해 보고. 제가 보기에는……

○**김승수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호텔관광업은 문체부에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등록을 하고 그렇지만 호텔 안의 소방점검은 소방에서 하는 거고 위생점검은……

○**민형배 위원** 그럼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김승수 위원** 소관이 그런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그 방식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교육만 안 받고 있었다 이거지요,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다른 건 다 지자체나……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는……

○**민형배 위원** 지자체나 정부가 관리하는 대로 하고 있었고……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수를 다 관리하고 있느냐 그 부분은……

○**민형배 위원** 사무관님, 그거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도시민박업하고 한옥체험업이 실제로 이 업소들이 업소로 되어 있는 거 보면 다 등록을 해서 허락받고 할 거니까.

○**김승수 위원** 아까 민박에 대해서도 외국인 도시민박은 문체부에서 하는데 다른 거는, 농어촌의 국내 외국인 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한다는 말이지요. 외국인 도시민박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만 허용이 되는데 서울시는 자체의 그걸로 해서 내국인도 일부적으로 허용하도록 되어 있고 부산도 지금 그렇게 허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때문에 좀 전체적인 체계를, 또 관리 체계가 다른 거에 대해서 이거는 검토해서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알아보자는 이야기예요.

○**배현진 위원** 그런데 저는 좀, 관리하는 건 관리하는 대로 저희가 지금 보고를 받고

점검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교육을 하자고 하는 이 법안 자체는 보류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은……

○민형배 위원 아니, 그건 좋은데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않고 있어서 하자 이거 오케이라니까요?

○배현진 위원 그게 지금 어쨌든 도시민박업에 관한 것은 문체부가 도시민박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체 다 관할하는 거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배현진 위원 농어촌민박업 이렇게 따로 분류된 거 말고 도시민박업이라고 이름 붙은 거는 문체부가 다 관리하는 건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다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해당이 아닙니다.

○배현진 위원 숙박 형태가 에어비앤비 등 최근에 새로이 공유숙박이라는 게 생겨났고 지금 하나씩 이렇게 퍼즐처럼 짜맞춰져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전에 말씀 중에 ‘지자체에 다 맡겨 놓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전수를 다 확보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 사실 되게 무책임한 얘기예요, 문체부가 이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추후에라도 다시 한번 저희에게 꼭, 위원들께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안전교육을 하자,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자라는 법안 자체는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내국인 민박업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내국인이오?

○민형배 위원 내국인을 상대로 한 민박도 할 수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안 됩니다.

○민형배 위원 진짜요? 사무관님, 안 돼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 이나은 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민형배 위원 완전히……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이게 외국인만을 목적으로 해서 허용된 제도입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위생관리를 안 하고 교육도 안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위생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위원장 임오경 법적 근거가 없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 그런 의미인 거지요?

○민형배 위원 아니……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아니요, 그건 위생교육 부분이고요.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외국인들을 맞이하는 관광숙박업, 민박업에 대해서 그동안 교육도 안 받고 위생관리도 안 하고 위생점검도 안 하고 그랬다는 말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거는 위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모텔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검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더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법에 있어서는 좋은 취지의 법안이라고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동의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안들은 별도로 의원실에 직접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다음은 다자녀가구의 숙박·관광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 근거 마련, 민형배 의원안 제47조의3제3항 신설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소위 자료 8쪽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가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숙박·관광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자녀가구에 불편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관광 분야를 통해서 저출생 문제 해소에 일조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관광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고령자의 관광 활동 지원 시책은 현재 규정되어 있고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 중이지만 다자녀가구 대상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5인 이상 가족이 금전적인 부담과 불편함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다만 개정안에서, 12페이지에 조문이 있는데 숙박·관광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이라고 개정안은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다자녀가구의 관광을 위해서는 숙박·관광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제공, 교통 편의, 할인권 제공 등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또한 현재 법에 있는 장애인, 고령자 지원조항에서도 종합적인 시책이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인 시책’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하단에, 다자녀가구 자녀 수에 대해서 지방세특례법, 취업 후 학자금법 등에서는 다자녀가구 자녀 수를 3명,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다자녀가구 자녀 수를 2명으로 각각 좀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다자녀가구 수든 구체적 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조문 12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입법취지에 공감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보완하여 수정 수용입니다.

말씀드린 종합적인 시책과 관광시설 외에 다자녀가구 요건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요. 범정부 차원에서 다자녀가구 지원을 두 자녀로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감안했을 때 저희도 그렇게 두 자녀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 말씀 부탁드립니다.

○**배현진 위원** 저는 굉장히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뒤에 제일 염려하신 바가 다른 법상의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의조항과 비교해서 문체부에서 알아서 현실에 맞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

○**김승수 위원** 하여튼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다자녀도 이제는 2명 이상을 다자녀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실제 제가 세 자녀로서 느꼈던 불편함을 이 법안에 그대로 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다자녀를 위한 편의 시책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배현진 위원** 동의합니다.

○**진종오 위원** 저도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너무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신혼부부도 좀 포함시키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자녀도 물론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신혼부부도 어느 정도 약간 더 필요성을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좀……

○**배현진 위원** 신혼부부가 방을 따로 잡지는 않는……

○**진종오 위원** 따로 잡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지역을 관광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보니까……

○**민형배 위원** 할인해 주자는 뜻인가요?

○**진종오 위원** 그렇지요, 할인에 대한 폭을 주자라는 거지요.

○**배현진 위원** 근본적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행을 장려하자 이렇게?

○**진종오 위원** 그렇지요, 여행을 자꾸 독려시켜야지요.

○**민형배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배현진 위원** 많이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냥 한방에서 자면 되는데 반드시 2개를 얻어라, 3개를 얻어라 이렇게 되니까.

○**배현진 위원** 예, 엑스트라 베드 어디 놓고 이불 놓고 하더라도 비용도 많이 덧붙고, 현실적인 부분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2명이라고 하는 이 규정을 여기다 단서조항을 붙여서 해야 되나요?

○**소위원장 임오경** 2명 이상?

○**민형배 위원** 다자녀가구의 요건을 법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다자녀가구의 요건을 법으로 규정해 줘야 되느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 박미경** 관광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지금 다자녀 기준에 대해 부처마다 정책 분야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부령에 위임을 하여 정하려고 합니다.

○**민형배 위원**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법에도 이런 게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 박미경**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대개 이걸 법에다가 이렇게…… 다자녀가구 요건은 영으로 정한다 보통 이렇게 돼 있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 박미경** 예, 보통 입법례를 참고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10페이지 입법례 참고해 주시면……

○**민형배 위원** 봤습니다. 봤는데, 다자녀 이게 필요한가? 법에다가 이걸 해 놔야 되는가?

○소위원장 임오경 아까 배현진 위원님도 다자녀의 정의가, 규정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교육부에서 다자녀라고 해서 2인 이상부터 다자녀로 들어가잖아요, 정부가 지정해 놓은.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이나 돌봄, 유치원 등에 있어서 다자녀 하게 되면 2인 이상이 되다 보니까 4인, 5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들이 지금 계속해서 현장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부처마다 다자녀가구의 정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체부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여기다 기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봅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서 교육부에서 이러한 문제로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이자 면제 대상 여기는 법에다가 아예 3자녀 이상인 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아, 이건 다 규칙이구나.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이 그런 건데, 공무원 임용령…… 알아서 하십시오.

○배현진 위원 그런데 지금 문체부의 수정의견은 어쨌든 2명으로 못 박은 것은 아니니까 그걸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고……

○민형배 위원 아니, 영으로 위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 박미경 예, 맞습니다.

○배현진 위원 오히려 문체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숙박하는 데 있어서 더, 여행하는 데 있어서 자녀가 많은 가족도 비용 문제나 이런 부담에 대해 차별을 받지 않고 하려면…… 다른 데는, 다른 부처의 법안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성의 다자녀 정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행이나 관광 장려 목적 이게 크니까 고려해서 민형배 의원님의 안을 어쨌든 최대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2인 이상……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있다고 그래서,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은 관광시설에 이미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숙박·관광시설을 관광시설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숙박·관광시설을 그냥 관광시설이라고 하면 된다?

○배현진 위원 더 크게, 그냥 숙박시설만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 이미 포함되는 개념……

○김재원 위원 동의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숙박·관광시설을 관광시설로……

○소위원장 임오경 숙박 및 관광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민형배 위원 관광시설.

○소위원장 임오경 아니지요, 관광시설이면 관광하는 것에 관련되는 것만 하니까……

○배현진 위원 다 좋지요, 뭐.

○소위원장 임오경 숙박을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박을 빼고 관광시설만 넣는 게 좋으신 것 같아요?

○김재원 위원 아니, 숙박·관광시설 같이 하자는 말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아니, 그러니까 숙박·관광시설을 관광시설……

○전문위원 전완희 숙박 빼자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원 위원 숙박을 빼자고?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는 숙박을 빼자고 하는 건데 저희는 넣자라는 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 포함된……

○민형배 위원 아니요, 아니요.

○소위원장 임오경 빼도 돼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 박미경 관광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관광시설 안에 숙박시설이 하위 개념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의 통일을 기하여 관광시설로 표기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위원 숙박시설과 관광시설을 병렬적으로 표기할 필요가 없다, 그냥 관광시설만으로 충분하다 그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 박미경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임오경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3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2항까지 2건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소위 자료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먼저 표지 뒤쪽, 지난 8월 28일 1차 소위 때 논의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 여행객의 국내 의료관광 수요에 대해 정부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수익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지자체에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체부가 복지부 관할인 의료를 넘어서지 않도록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치료 목적의 관광과 웰니스 관광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구분이 필요하다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1페이지 제정 필요성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 요지 및 수정의견을 요약한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보고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조(목적)는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내용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정의에서는 치유관광,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등이 있는데 치유관광의 정의에 웰빙, 행복의 의미를 담아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오른쪽 수정한 내용,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이것은 제정안에 있는 내용인데—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 '삶의 질 향상 추구'를 추가하는 수정안 내용입니다.

그리고 치유관광자원 예시 중에 경관, 온천, 음식 등이 있는데 여기에 다른 의원님 안은 맨발걷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맨발걷기는 활동 개념이므로 포함하는 경우 자원 개념인 맨발걷기길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기재부의 반대의견 등을 참고해서 ‘마련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협력체계 구축 등은 일반적인 타 제정법안과 유사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치유관광사업의 등록의 경우 제정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나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다르게 광역기능만 수행하므로 관할구역 내 시장·군수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는 제외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안에 ‘특별자치도지사(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가 없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제주도는 포함하되 전북·강원은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안입니다.

다음,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은 필요한 조치이나 인증취소 시 청문 절차가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쪽 전문지원기관 등, 문체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보조하기 위해서 시·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도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등에 있어서는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입니다.

그리고 하단, 전문인력 양성의 경우 문체부장관이 대학·연구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지정취소의 경우는 청문을 필요적 절차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대상 비용지원이라든가 재정지원안이 있는데 이는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중복 조항이라 삭제될 필요가 있다는 기재부 의견이 있습니다.

오른쪽 9페이지입니다.

치유관광산업지구 신청의 경우에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선정되더라도 관광기금이 아닌 자체적인 제주관광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지만 강원·전북의 경우는 특별자치도로 설치되었지만 광역기능만 수행하므로 신청권자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청권자는 ‘특별자치도 제외’는 빼고 시·도지사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사항이 있는데 이 또한 기재부에서는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별첨 등에서는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자체가 재량사항이므로 우수치유관광시설을 허위로 인증받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지 않고 허위로 표시한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정안은 500만 원 이하인데 유사 입법례를 감안해서 100만 원 이하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일부 문구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수정 수용하여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부탁드립니다.

○**민형배 위원** 몇 가지 여쭐게요.

과태료를 수정했잖아요? 수정 제안이 돼 있는데 기준을 약화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9쪽 별 칙에.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과태료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한국관광 품질인증 그리고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 등 유사 의무 위반행위 과태료 100만 원 이하 수준을 감안하였습니다.

○**민형배 위원** 다른 데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

○**전문위원 전완희** 자료 뒤쪽 45쪽 보시면 유사 입법례에서 100만 원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치유관광시설로 인증받은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그러니까 입법을 하신 두 분은, 배현진 의원님 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아마 김윤덕 의원님 안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인가 보지요? 그런데 이것 너무 솜방망이인데, 괜찮습니까?

○**김재원 위원** 꼭 타 입법례를 준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준용을 한 겁니다.

○**김재원 위원** 아니, 준용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그것은 아닌데……

○**김재원 위원** 너무 솜방망이, 100만 원 내고 그냥 또 하면……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김재원 위원** 그것으로 얻어지는 영업, 매출이익이 더 크다고 한다면 또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전문위원 전완희** 전문위원이 잠깐 설명드리면요, 지금 이 법에서는 우수관광치유시설의 경우 등록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수치유관광시설 그것을 허위로 인증받거나 그것을 안 받았는데, 우수가 아닌데 우수라고 표시하거나 그런 경우 해서……

○**김재원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수치유관광시설 아니야, 그런데 내가 우수치유관광시설로 딱 걸어 놓고 호객행위를 많이 하고 고객이 많이 왔어 그래서 매출이 많이 올라갔어, 그런데 실제로는 우수하지 않아. 그런데 우수한 것으로 해 가지고 수입을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100만 원 하고 나면 또 해, 그다음에 또 하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러는 거지,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고 저도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원래 초안에는 이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전문위원 전완희** 그 조항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인증을 안 받았는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민형배 위원** 그게 연계돼 있는 거잖아요. 인증 안 받았는데 인증받았다고 한 것에 대

해서만 지금 500만 원 이하로 돼 있는데 100만 원 이하로 낮춘 거잖아요?

○전문위원 전완희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건 아예 그냥 거짓말한 거고 이건 인증받았다고 거짓말한 거고. 그러면 마찬가지인데요, 우수관광치유 인증받은 것 자체를?

○김승수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이 적절하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업종이 어쨌든 초창기고 진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법안 전체 내용에 대해서 세부 심사를 하기 전에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전체회의 때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을 통해서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법안을 쭉 보시면 현재 배현진 의원안과 김윤덕 의원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건 제정법입니다. 그리고 21대 국회 때도 같이 있었던 의원님들도 있고 22대에 새로 오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배현진 의원께서 이 법안을, 2023년 3월 달에 이 제정안을 발의했어요. 그리고 제정법에 따른 심사 절차에 따라 가지고 공청회를 2024년 9월 달에 했습니다. 무려 1년도 더 뒤에 김윤덕 의원께서 이 법안을, 제정법을 제출하셨는데 제정법안을 제출하셨던 의원께서 계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혹시나 또 몰라도 같은 의원께서 여전히 또 같은 위원회에서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서……

실제 김윤덕 의원안을 보면 배현진 의원안의 일부 조항만 바뀐 사실상 개정안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똑같은 제정법으로 심의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 의원님들 간에 또 문제위 전체적으로 조정이 있고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나. 똑같이 제정법으로 병합심사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논의가 선행되고 난 이후에 심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민형배 위원 전체회의로 넘길까요?

○배현진 위원 지난번에 전체회의에서 제가 굉장히 격렬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법안은, 사실은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안을 배현진이 오로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법안으로 만들고자 함은 전혀 아닙니다. 그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이 법안의 이름, 왜 우리가 의료법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치유관광산업으로 했는지, 다른 부처와의 어떤 충돌은 없는지 등의 기초적인 부분부터, 실은 저희가 발의는 2023년에 했지만 그 이전에 2년 전부터도 준비를 쭉 해 왔던 사안이고. 17페이지, 23페이지 등등 보면 아시겠지만 법안의 조문이 동일합니다, 조사까지.

제가 처음에 이 보고를 받았을 때 저희 보좌진이 진짜 평평 울었어요. 여기도 문제위의 많은 우리 식구들이 있으시겠지만 누군가는 밤잠 안 자고 또 많은 부처의 식구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어렵게 만든 법안입니다. 제정법은 물론 지적하신 대로 부족함도 있고 성근 부분도 많겠지만 골자와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김윤덕 의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취지의 방향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개정안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방향이고 또한 전북자치도·강원자치도를 배제했다는 것은 김윤덕 의원실에서 조금만 문체부랑 상의를 해 보셨으면……

저희가 2023년 발의할 당시에 그때는 제주특별자치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기금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세금의 이중 과지급을 막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를 배제한다고 했지 강원과 전북을 지목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저희가 선거를 마치고 22대에 들어와서 다시 발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전북도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뒤늦게 그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번 법안심사소위 때 위원님들께서 법안이 너무 방대하고 제정법이라 심사를 일단 보류하고 공부하자라고 하셔서 못 보셨겠지만 그 부분들을 배제하기로 이미 우리 소위 심사안에 다 반영이 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윤덕 의원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신지를 여쭤보려고 진짜 많이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저한테 응답을 안 하시고 거부하셨기 때문에 지난 전체회의 때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특히 제정법에 관해서는 우리 상임위든 국회 내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정법을 기준 취지대로 그리고 저희가 문체부와 상의해 온 대로 기본적인 제정법으로 제 것을 단독 상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윤덕 의원님의 안은 개정법이나 그 이후의 많은 안에 있어서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바로 내신다고 하셔도 공동발의 등 의 많은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앞서도 노력해 왔지만 특별한 광역자치도나 이런 것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특히 제정법, 개정법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다른 곳도 아닌 문체위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사료해 주시고.

제가 오늘 계류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독 상정을 부탁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국회법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임오경** 배현진 위원님의 말씀은 잘 경청했고요.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만약에 이 법률을 접수할 때 동일한 법률이라고 생각했으면 이걸 반려했을 거예요. 이 두 법안이 동일하다면 의안과에서 김윤덕 의원 법안 접수를 반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법안은 모두 정상적으로 의안과에 접수가 되었고……

○**배현진 위원** 반려 권유를 하지요. 저희도 군 인사법……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배현진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정해야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저는 국회에서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위원님들에게 일단 배현진 위원님이 이 법안에 관련돼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저는 국회의 의안과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빼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기서 빼

고 또……

○**배현진 위원** 의안과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여기서는 반려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배현진 위원** 아니요, 반려 권고를 했다고요.

○**소위원장 임오경** 정상적으로 숙려기간을 거쳐서 지금 올라온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빼고 넣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사실 확인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제 법이기 때문에 다 했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저는 그때 전문……

○**배현진 위원** 저 또한 군 인사권, 성추행 관련 법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발의를 했는데 저도 몰랐지만 다른 의원이, 그것도 다름 아닌 국방위 소속 의원께서 내셨다기에 법안을 전체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회의, 저희가 상도의라고 말하기는 좀 가볍지만 그게 정상 아닙니까? 모르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정법을, 김윤덕 의원님은 심지어 지난 21대 때 저랑 이걸 심사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문체부 식구들도 계시지만 ‘왜 윤석열 정부 법안만 이렇게 밀어주느냐’라고 소위에서도 말씀하실 정도로 이걸 반대하셨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됐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까 내용을 심사하다가 다시 절차와 형식에 관한 논의로 왔는데 위원장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내용 심사를 할 겁니까, 절차와 형식에 관한 논의를 우선할 겁니까?

○**소위원장 임오경** 저희가 여기서…… 절차,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은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민형배 위원** 배현진 위원님이 지금 다루고 계시잖아요.

○**소위원장 임오경** 배현진 위원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여야에서도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의안과에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마지막에 결과는 문제없는 걸로 확정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배현진 위원** 당해 의원이 강행해서 발의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 말은 시정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확인 안 하고 반려하지 않았다라는……

○**소위원장 임오경** 행정실에서 확인 다 해서 저한테 지금 말을 해 준 거니까……

○**배현진 위원** 확인 다시 하세요. 하시고……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니까 지금 행정실에서 확인한 거예요.

○**배현진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저는 대승적으로 지금 이 웰니스 법안은 실제 지난 코로나 시기에 정말 횡폐화됐던 지역 관광자원의 소생을 위해서 저희가 그래도 목적을 가지고, 여기 다 지역구 의원님들이시지만 정말 좋은 곳 많은데 그 자원 살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 민주당 사무총장이신데 솔직히 위원님들 얼마나 난처하시겠어요.

○**민형배 위원** 자,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민주당 사무총장 법안이라고 무조건 합니까, 저희가? 그건 아니고……

○**배현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데……

지금 제 말씀 들어 주세요.

그 심정적인 것도 제가 해아린다는 말씀입니다.

○**민형배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의 정리를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절차상, 형식상 이 두 법안을 같이 심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소위원장 임오경** 지금 절차상으로는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혹시 절차상 문제도 따져 보셨나요? 그냥 내용만 보신 거예요?

○**전문위원 전완희** 예, 전문위원은 내용적으로 검토했고요. 절차적인 문제는 행정실장님의 더 정확히 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종오 위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면 안 하는 게 맞지요.

○**민형배 위원** 행정실장님……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수석전문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법이 오면 당연히 소위원회에 회부되고 같은 법안은 같이 심사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통상적인 절차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하나를 빼고 하나만 심사를 하려면 이건 위원장님, 여야 간사님 간에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합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위원장님이 결정하실 만한 사안은 아니고 우리 위원회 전체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어쨌든 별도 심사할 생각 전혀 없으시지요?

○**소위원장 임오경**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배현진 위원** 있으세요?

○**소위원장 임오경** 예.

○**배현진 위원** 위원님들, 이것 법안 디테일한 조항에 아까 100만 원……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갔다가 왔으니까 지금……

○**배현진 위원** 예, 그런 것 빼고는 사실 김윤덕 의원님 안과…… 23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 제 이름이 같이 써 있어요. 왜냐? 은, 는, 이, 가 조사까지 이미 똑같아요, 조문이. 그래서 보실 필요가 없어요.

○**민형배 위원** 아니에요, 저는 지금 법안에 대해서 할 것 많이 있어요.

○**소위원장 임오경** 저는 법안에 대해서도 질의할 게 많아요.

○**배현진 위원** 아니, 법안심사 말고 2개 법안이 다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김윤덕 안과 배현진 안을 달리 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고 저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21대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공청회를 한 것은 모두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22대에서 저도 제 법안을, 제정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문위원과 다시 논의를 해서 다시 저도 발의를 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통과가 된 사례인데, 제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상대 의원께서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고, 이건 정치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야 간사 간 명의로 제정법을 통과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실언하고 계세요.

지금 첫 번째……

○**소위원장 임오경** 전문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현진 위원** 제가 지금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저도 듣고 생각하겠다는 건데 위원님이 지금 결례되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소위원장 임오경** 아니, 위원님들이 지금 모르고 계셔서 설명이 좀……

○**배현진 위원** 전문위원과 제가 상의하지 않고 입법했습니까?

두 번째,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았다?

○**소위원장 임오경** 아니, 제가 숙려기간을……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자기 법안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임오경** 내 얘기를 말한 거고요.

○**배현진 위원** 두 번째, 위원님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괜찮다 이 말씀이세요?

○**소위원장 임오경** 아니요, 그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민형배 위원** 그게 아니고, 이 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배현진 위원** 그런 오해 있는 말씀 하지 마세요.

○**민형배 위원** 위원님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그랬다는 얘기지.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얘기 하지 마시라 이거지요.

○**소위원장 임오경**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이러한 법안에 있어서는……

○**배현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사족이에요, 지금 말씀에 위원장님께서.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건 전제적으로 놔두고 이 법안 과정 절차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22대에서 법안을 첫 상정한 게 지금 배현진 의원은 언제였어요? 6월 달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6월 14일 날 발의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김윤덕……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 저희가 그냥 계류시켰던 그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그 수정된 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니까 제 말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제 말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김윤덕 의원 법안은 2024년 8월 26일 날 발의가 되었어요. 이날 저희가 상임위 전체회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안소위는 그 이틀 후 28일 날 법안소위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특별자치도가 빠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김윤덕 의원님이 법안을 새로이 발의를 했는데 저희가 그 법안 또한 상정을 그 당시 하지는 않았지만 병합해서 논의를 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고……

○**배현진 위원** 발의가 안 됐으니까 안 한 거고요.

위원장님, 됐고요.

○소위원장 임오경 발의는 했고요. 법안 발의는 했습니다.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이 김윤덕 의원님 변호해 주시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듣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저희가 상정에 올라오지 않아서 그랬던 거지.

○배현진 위원 저는 오늘 심사소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제가 지난번 문제 제기를 크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난처하실 걸 알아요. 지금 저희가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자고 제안드리는 데 왜 불필요한 말씀을 하셔서 오해를 낳습니까?

○소위원장 임오경 아니, 지금 배현진 위원님은 김윤덕 의원님 걸 배제하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작부터.

○배현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다고. 단독 상정은 못 하시겠느냐고요, 위원장님께서?

○소위원장 임오경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한 것처럼 상임위 전체 차원에서 이건 정치적으로 다뤄야 된다……

○배현진 위원 못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소위원장 임오경 여기 소위에서 결론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현진 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입법을 했기 때문에.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진종오 위원 결론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니까 전체회의에서 저걸 다루는……

○배현진 위원 제가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바쁘실 텐데 목적은 어쨌든 치유관광법안이 너무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심사소위에서 위원장님께서 난처하시고 절대 이걸 굽히지 않겠다면 저는 오늘 심사하고 둘 다 통과시키는 방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위원 둘 다?

○배현진 위원 예, 같이 심사해서 하시지요.

하시고요. 다만 제가 우리 문체위 소속 위원님들과, 여기 아마 당이 달라도 보좌진님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문체위 안에서라도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국회 안이, 우리가 여기 입법하는 기관에서 감사, 청문회 때 얼마나 준엄하게 다른 후보자 등에게 그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저희가 입법 때, 특히 이런 제정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말 서른 글자도 안 되는 것 그냥 은, 는, 이, 가 조사까지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내놓고 입법심사를 홀딩시켰다가 다시 병합심사하는 식의 이런 방안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민형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개 법안에 대해서 같이 병합해서 심사하시고 소위를 통과시키는 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의 각각이라는 말은 아니네요, 그러면 다시?

○배현진 위원 예.

제가 다만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앞으로는 특히 제정법에 관해서…… 제가 의안과에,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미처 확인하지 못하셨던 것 같은데 반려 권고가 당연히 있었지요. 그런데 의원이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그냥 발의해 버리면 사실 국회에 그것을 막을 기준이 없습니다. 그 지점에서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K-콘텐츠 관련한 그 입법이 굉장히 억울한 사연으로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정법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저나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국회 입법 저작권에 관해서 함께 논의하고 그 기준을 국회사무처 내에서 만드는 방안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의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민형배 위원 수석님, 입법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무슨 논의하자는 거야……

○배현진 위원 아시잖아요.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어떻게 해 달라고……

○배현진 위원 제정법은 기역, 니은, 토씨 하나부터 쓰는 건데 개정법 같은 것은 90% 똑같고 안에 조문 하나 달라지고 하는 게 통상적인…… 입법 저작권이라는 말 없습니다. 없으나 아시잖아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그렇지요?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각각의 헌법기관인, 입법권자인, 입법자인……

○배현진 위원 의안과에서 이 법은 사실상, 특히 김윤덕 의원님의 안 같은 경우는 제가 얹지 부리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두가 저와 비교해서 형광펜으로 줄 치며 읽어도 99.99% 같다는 사실은 동일하게 동의하실 겁니다. 이러한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지금 사인받아 가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같이 연구하고 앞으로 방안을 만들어 가자는 데 동의를 해 주세요.

○민형배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여기 심사 과정에서 논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배현진 위원 관련한 입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윤덕 의원님의 사례는 실제 많은 부문의 저작권을 논의하는 우리 문체부에서는 굉장히 창피한 사례로 남을 거라고 저는 기록을 남겨 두고 싶습니다.

○민형배 위원 자, 이것만 정하시지요, 병합심사를 할 건지 하지 않을 건지.

이것은 지금 배현진 위원님 말씀대로 단독 상정을 해서 할 거면 전체회의에 가서 정치적으로 합의 내지는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방법을 찾고 그렇지 않으면 원래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소위원장 임오경 아니, 배현진 위원님은 지금 병합심사를 한다고 수용을 하셨고요. 재발방지를,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민형배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알아들었고요.

재발방지 얘기는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얘기해 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소위원장 임오경 예,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김재원 위원 단독 상정할 거면 병합심사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배현진 위원 아니, 단독 상정할 거면 병합심사할 필요가 없고요.

○김재원 위원 그걸 인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병합심사로 오는 걸?

○**배현진 위원** 병합심사하시자고요. 왜냐하면 심사……

○**김재원 위원** 배현진, 김윤덕으로 올라갈 텐데……

○**배현진 위원** 예.

저는 싫어요. 정말 싫지만 우리 여당 위원들이 다 동의해 주셔도 저희가 이것을 막지 못할 거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민형배 위원** 막을 수 없지요.

○**배현진 위원** 전체회의 가서 다른 민주당 위원님들까지 난처하게 뒀하려 제가 일부러 만들겠습니까? 심사소위에서 병합심사해서 하시고요. 다만 앞으로 우리 문체위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대안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배현진 위원** 하시자고요.

○**민형배 위원** 그러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수석전문위원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같이 병합심사를 하자고 하셨고 이런 기준을 만들 것을 국회사무처에 지금 만들어라라는 건의를 하시겠다는 거니까 제가 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논의를 전달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것은 상임위 전체회의 때 말씀하시지요.

○**배현진 위원** 예, 그것도 할 거고요.

○**김재원 위원** 배현진 위원님이 내신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병합심사하는 것.

○**민형배 위원** 아니, 그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할까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임오경** 예.

위원님들, 질의답변해 주십시오.

○**민형배 위원** 아까 제가 100만 원 얘기하다가 그렇게 갔는데 이것은 벌칙이고,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치유관광산업을 하게 되면 치유관광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여기 우수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아까는 그것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처벌한다 이런 거였는데 지원안은 혹시 이 안에, 정부 쪽 혹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입니다.

○**민형배 위원**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이 법에는 명시적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민형배 위원** 그것 필요하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이분들이 되면 관광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이나 이런 것들 보면 관광사업자들은 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관광진흥법에 나와 있는 인센티브를 여기서도 적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치유관광업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 이를테면 처음으로 업종 분류 코드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래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민형배 위원 그 준비는 좀 돼 있어요? 법이 통과되고 나면 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민형배 위원 어디까지 준비가 돼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일단 저희가 기초연구를 좀 한 건 있고요.

○민형배 위원 기초연구를 좀 한 게 있습니까, 입법에 대비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 뒀습니까? 이것 지난 21대 때부터 했다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현황이라든지, 외국이나 우리나라의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민형배 위원 아니, 제정되면 이 법의 시행이 언제부터입니까? 부칙에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1년입니다.

○민형배 위원 1년?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민형배 위원 1년이면 그 과정의 준비 상황이 충분히 돼 있느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저희가 준비……

○민형배 위원 그냥 뭐 일부 연구한 것도 있고가 아니라 정확하게, 용역도 좀 해 보셨어요, 치유관광산업에 대한? 어떻게 육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민형배 위원 한 번 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민형배 위원 그런데 그것 해 보니까 전에 여기에서 의논되던 것처럼 기대효과가 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기대효과는 충분히 있고요.

○민형배 위원 충분하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또 아시겠지만 자자체나 이런 데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다만 우려하시는 대로 관광사업자 형태로 저희가 등록을 어떤 형태로 받는다든지 통계적으로 어떻게 산업적으로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잘 준비를 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다른 한 가지는요, 이게 이제 새로운 산업 분류에 포함돼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업체하고 종목이 나오면 신고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아마도 국세청 그러니까 세무 당국하고 논의가 돼야 될 거예요. 이것도 세금 부과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 논의는 됐어요? 그 논의는 좀 준비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문제가 생길지 이런 데 대한 검토는 아직 안 해 보셨고.

제정을 하자마자 1년 뒤에 시행을 하게 되면 그사이에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야 되고. 제정하게 되면, 제정법을 만들게 되면 그전에 앞으로 절차와 내용에, 과정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검토를 사전에 하지 않나요, 제정법이 나오면?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그 단계까지는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다만 1년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1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시행령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새로운 산업 분류표에 포함되게 되고 과세 대상이 돼서 세무 당국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그런데 그런 과정은 아직 없었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민형배 위원 보통 법이 제정될 때 사전에 그런 것 논의 안 하세요, 정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제회의산업법 같은 경우는……

○민형배 위원 국회에서는 거기까지 안 한단 말이요.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기만 하지, 그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 필요한 절차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규정 이런 것들을 다 검토 할 것 아니에요.

아니, 뒤에 혹시 사무관님들……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 이규원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 이규원 사무관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시행령과 함께 말씀하신 업종 분류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를 진행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 이규원 예.

○민형배 위원 사전에는 아예 아직 검토는 안 해 봤……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 이규원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됐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게 21대부터 나왔는데 아직도 검토가 안 됐어.

○소위원장 임오경 업종 분류는 끝났어야지, 지금.

○민형배 위원 배현진 의원님 힘들여서 만드는데 그런 준비를 안 해 놓으면……

검토를 한 번도 안 해 봤다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 이규원 사실 치유관광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진행했던 연구에서는……

○민형배 위원 대한민국에 없던 새로운 업종이 지금 등장을 하는 것 아니에요. 치유관광업이라고 하는, 치유관광업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어느 정도는 준비가 돼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입법이 되는 과정에 따라서 그걸 준비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 이규원 예.

○민형배 위원 입법이 다 되고 나면 하겠다? 검토는 좀 해 봤다, 어느 정도?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 이규원 검토는 조금 해 봤지만 아직 자세하게 그 업

종이 어떤 업종인지까지는 준비가 덜 됐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런 것 하면 용역도 막 하고 뭐 그런 절차를 준비하고……

○배현진 위원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것 보건복지부와 충돌하는 지점도 굉장히 많아서 부처 간의 격벽을 없애든 그것을 충돌을…… 하실 거면 어떤 기준을 만들든 검토를 많이 하셨어야 되고, 저랑 문체부가 논의한 게 지금 3년 가까이 돼 가는, 3년이 넘어 가는데 그 말씀은 좀 무책임하신 것 같고요.

처음에 이 법안에 만들게 된 것들은, 시작은 해외의 관광객들이 막 코로나 끝나고 들어올 때 저희가 지역 관광지가 다 이미 너무 소멸해 버렸었잖아요?

○민형배 위원 웰니스라고 곳곳에서 치유관광,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불렸지만 이런 활동들이 막 있었으니까요.

○배현진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미용·뷰티산업 비롯해서, 보건복지부가 의료계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는 명상 이런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을 일부 브로커가 아니라 정말 부처에서 양성화시켜서 각 지역 세포 단위 구석구석까지 이 조직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을 처음에 설계하게 됐던 겁니다. 부처에서 위원들이 이런 걱정하시지 않도록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형배 위원 전문위원님 혹은 국장님, 이 법과 다른 법의 충돌 가능성은 다 검토를 해보셨나요? 제정을 딱 했어, 제정한 뒤에 이것 검토하면 늦거든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충돌 가능성 검토를 했고요. 법안에 보시면 일단 예를 들어서 해수부에 관련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민형배 위원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다른 법들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주무 사무관님 어느 분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 이규원 예.

○민형배 위원 다른 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 이규원 예, 충분히 돼 있고요. 해양치유법 그리고 산림문화·휴양법, 치유농업법……

○민형배 위원 거기 똑같은 개념이 있고, 산림에도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 이규원 같은 조항에 대해 충돌이 있을 경우 그 법을 우선한다고……

○민형배 위원 그 법을 우선해요, 이 법을 우선해요?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 이규원 그 법을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쪽 법을?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 이규원 예, 그렇게 해양수산부라든지 타 부처들과 협의가 됐습니다.

○배현진 위원 이미 지난번 공청회 때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다 논의를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법률 간에 충돌할 가능성은 없다?

○배현진 위원 예. 그 해소를 하려고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을 다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다음에 또 몇 가지 더 해 볼게요.

15조를 보면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대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곳이……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전문기관은 한국관광공사라든지 웰니스관광협회와 같은 그런 조직들을……

○민형배 위원 웰니스관광협회는 민간단체고 관광공사는 공공기관인데 이때 전문지원기관이라 하면 민간을 생각하는 겁니까, 공공을 생각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저희가 우선적으로 든 것은 공공 부문입니다. 관광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사업 경험이 있고……

○민형배 위원 그런데 관광공사는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하잖아요. 지금 이 치유관광은 전문적인 특별한 영역을 규정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그런데 관광공사의 조직 내에 웰니스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예산 사업도 하고 있고요.

○민형배 위원 그러면 관광공사가 지원기관이 돼서 거기에 있는 한 부서가 이걸 맡게 한다? 그런 전문기관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까?

○배현진 위원 지금 이를테면 서울시도 그렇고 이런 웰니스관광에 대한 그걸 전부 다하고 있어요. 아마 전북도도 그렇고 다 있을 텐데……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문체부가 생각하는 전문지원기관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느냐고요.

○배현진 위원 그걸 통합하는 기관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관광공사로……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통합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관광공사를 염두에 두고 있고요, 왜냐하면 새로 조직을 신설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에 있는 것들은 이 법에 보면 지원센터라고 또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던데 지정할 만한 그런 게 관광공사 말고는 없어요? 관광공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관광산업에 관한 걸 다하는 곳이니까, 혹시 어느 대학의 무슨 연구소 이런 거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현재로는 공사하고 그런 협회……

○민형배 위원 그러면 그걸 새로 만들 생각도 없고?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저희가 만들면 좋겠지만 지금은, 사실 이 법을 통해서 만들겠다고 하면……

○민형배 위원 이게 기대효과나 이런 걸 보면, 전에 보면 꽤 규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법에다가 지금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도록 해 놨는데 지원기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그런데 그게 있으면 오히려……

○민형배 위원 검토를 잘 안 한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아니요, 관계부처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나 기재부에서 조직 신설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하고, 기존 조직을 활용……

○민형배 위원 아니, 그건 일반론이고요. 정부가 기구 확장하는 건 지금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정원 확대하는 것도 다 반대하고 있고. 그건 일반론이고, 치유관광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고민을 해 본 게 있느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저희가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걸 고민을 해 봤더니 뭐가 나오더냐고요.

○배현진 위원 아니, 법안을 이렇게 숙지 안 하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융합지원과에서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 이규원 융합관광산업과 이규원 사무관입니다.

해양치유법에 따른 해양치유 전문지원기관도 기존에 있던 해양환경공단에서……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느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 이규원 해양치유 관련 팀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문체부도 관광공사의 웰니스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지금요?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 이규원 예.

○민형배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이 법의 4장을 보면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및 육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구 지정, 지정해제, 지구에 대한 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관광진흥법상 보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항에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지정된 지역의 행위제한 그다음에 지구의 조사와 측량 그다음에 치유관광지구에 대한 조성계획, 공공시설 설치, 준공검사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법에는 지정과 해제하고 지구에 대한 지원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의 지원이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항목들을 이 관광진흥법을 준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된 지역에서, 이를테면 가령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지금 이 법에는 행위제한 같은 거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다음에 치유관광지구에 대한 조사가 없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법에 이런 거 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부에서 그런 의견을 내놔야지 이 법의 완성도가 높아지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말씀하신 관광지나 관광단지 이건 법적 관광지를 말합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법적인 인센티브……

○민형배 위원 그 법적 단지하고 이 법의 치유관광산업지구가 다를 게 뭐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저희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형식적으로는 다를 게 없잖아요. 특정한 관광단지를 만든다 그러면 그 안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사는 어떻게 하고 측량을 어떻게 하고 그 안에서 행위는

뭘 할 수 있게 하고 뭘 할 수 없게 하고 조성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공공시설, 거기에 화장실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안내소가 필요한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법안에 그 규정이 없다고.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사업정책관 김근호 사실 저희가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민형배 위원 사무관님, 이거 검토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 이규원 융합관광산업과 이규원 사무관입니다.

사실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시설 같은 하드웨어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면 저희 치유관광산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를 집적시켜서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는, 타 산업의 클러스터랑 좀 다르게 관광산업시설 이동을 중요시 여기는 네트워크형 개념이거든요.

○민형배 위원 아이고,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숲에서 치유관광을 한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이 법에 따르자면 거기를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행위는 할 수 있고 어떤 행위는 안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어떤 공공시설이 필요한지 이런 게 준비가 안 된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면 이걸 아예 그냥 관광진흥법상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겁니다라고 하면 그렇게라도 해 둬야 되고,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 이규원 치유관광산업지구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결정이 되는 거고 말씀하신 숲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은 개별법의, 산림휴양법이라든지 해양치유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규정하는 것에다가……

○민형배 위원 치유관광산업지구가 광역 단위로 된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전부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 이규원 지금 그렇게 광역지자체 단위로 지구를 지정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민형배 위원 제가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광역지자체 단위라는 말은 그 단위 안에 치유관광산업지구를 따로 정한다는 얘기지, 치유관광산업지구라고 하는 걸 그냥 ‘전라남도 전역을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합니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사업정책관 김근호 이 제목 자체가 사실은 큰 의미를 두는 걸로 돼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문단지나 이런 관광단지는 그 안에 일정 범위 내에서……

○민형배 위원 보문단지가 제주 전체를 관광단지로 지정한 게 아니고 특정 사이트를 보문단지라고 하는 관광단지로 지정한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사업정책관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것도 그럴 거 아니에요? 치유관광산업지구도 제주 전체를 지정해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사업정책관 김근호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는 그 정도의 깊이나 텁스(depth)를 가진 게 아니고요. 각 지역을 엮어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러면 법에 대한 기본적인 콘셉트도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지금 이걸……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사업정책관 김근호 아니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인천 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으면 이걸 염려 가지고 이 염려 있는 네트워크 상태를 산업지구로 하겠다……

○민형배 위원 오케이, 그러면 아까 사무관 말씀하신 그게 맞아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그런 의미입니다.

○민형배 위원 광역 단위 전체를 지정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 이규원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래도 그건 좀 이상한데.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행위제한 말씀드렸는데 다른, 그러니까 실제로는 치유관광산업과 관계가 없는 영역까지 다 그 지구에서 제한되는 행위제한 같은 것의 규정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위원님, 저희가 의도하는 내용은 그 정도까지 제한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배현진 위원 아니, 저희 법안에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법안에는 제시가 돼 있는 거지요.

○민형배 위원 있어요.

○배현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 전북도를 한다 이런 규모에 대해서 제안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형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자꾸 광역 단위로 지정을 한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그러니까 광역 단위도 할 수 있고 시 내에서도……

○배현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열어 놓은 거예요.

○민형배 위원 아니, 여러 가지를 네트워크를 해서 한다면서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여기는 온천이고 여기는 숲이고 여기는 뭐고 하면 이걸 연결해서 한다면서요, 그 광역 단위 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교통편을 제공한다든지……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지정하면 다른 행위제한이 엄청나게 심해질 거예요, 다른 산업들은 엄청 영향을 받을 거고. 그래서 지정한 이 사이트에 대해서 계획이나 조사나 조성계획이나 행위제한이나 준공검사를 어떻게 하냐 이런 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인 여러 가지 그게 필요한, 산업단지라든지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거쳐야 할 제도적인 규제가 많이……

○민형배 위원 그러면 이 관광지는, 치유관광산업지구는 어떤 개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진홍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염려 주고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그런……

○민형배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시도가 다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이 되겠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그 대신 저희가 여러 가지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런데 또 법령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저희가 준수해야 되고요?

○**배현진 위원** 제가 아까 입법취지를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음성적으로. 지금 민형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도 자체 단위로 치유관광에 관한 부서도 있고 막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산발적이고, 말하자면 소위 관광업계 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으로 개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것을 엮어서 문체부가 어떻게 하면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 방안을 만들기 위한 게 골자예요.

○**민형배 위원** 그러면 이 법이 특별법이에요, 일반법이에요, 기본법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저희는 치유관광에 대한 일반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일반법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민형배 위원** 그러면 그게 구체화 안 되면 안 돼요. 기본법이면 지금 말씀하신 방식의 접근이 맞을 텐데……

○**배현진 위원** 왜냐하면 이미 저희가…… 지금 국장님이 이 제목이 포괄적이라고 하셨는데 치유관광이라는 것도 문체부에서 제안한 거예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의료관광 이런 것들과 충돌하지 않게끔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이 관련된 많은 업체들과 관광지가 이미 지금 다 현재 상황으로 업종이 영업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민형배 위원** 오케이. 그러면 정부가 생각하기에 이 법은 일반법이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일반법이면서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걸로……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기본법 성격이 강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을 기본법으로 해 두는 게…… 치유관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폭이 넓잖아요. 이런 업들이 좀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건가, 이걸 일반법으로 그냥 두는 게 좋을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본법적 성격은 강한데, 기본법적 성격은 있는데 그냥 일반법으로 두자? 조금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다만 기본법……

○**민형배 위원** 혹시 실무진에서 그런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이 법을 기본법으로 제정하는 게 좋으냐, 그냥 일반법 그대로 두는 게 좋으냐? 그런 검토는 안 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이게 기본법적인 성격도 저희는……

○**민형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기본법적 성격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타 부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민형배 위원** 그것까지 다 포괄하려고 하니까 싫어하겠지, 다른 부처는 당연히.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형배 위원** 해양치유, 산림치유 이런 것들까지 다 이 법으로 포괄하려고 하니까 싫어해서 ‘안 돼, 이건 기본법 아니고 일반법으로 그냥 네 분야만 니들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지금 했을 거 아니에요?

○**배현진 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효과는 저

희가 기본법적인 효과를 거두려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민형배 위원 아는데, 아까 그쪽을 우선한다 그래 놓고는 또……

○배현진 위원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이미 해양치유산업, 각각 부처별로 다 있는데 이를테면 의료관광 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에 대해서 문체부가 침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강력했기 때문에……

○민형배 위원 글쎄,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해 보는 거고요.

○배현진 위원 오늘 혹시 법안 통과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셨어요? 설명이 좀 간명하셔야, 이게 법이 지금 복잡하고 양이 많은데.

○민형배 위원 몇 가지만 더 해 볼게요.

보통 관광단지하고 관광지는 기초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광역지자체가 지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한 단계 위로 올려놨어요. 제가 왜 기본법적인 성격이 있다고 그러냐면 한 단계 올려놨어요. 이것은 시·도지사가 신청을 해서 문체부장관이 지정을하도록 해 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저희가 지금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웰니스 클러스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해당 지자체에서, 특히 광역단위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자기 지역 내의 이와 관련된 시설들을 연계해서 진흥시키는 사업을 저희가 공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준용해서 각 해당 지자체에서, 저희가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그런 사업을 기획해서 말씀하신 관광단지 이 정도의 아주 깊은 그게 아니고 뭔가 서로 네트워킹 시켜 주고 정보 제공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보면 저희 문체부에서 심사를 통해서 지정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어떤 특성이 절차를 그렇게 가져가는 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치유관광의 어떤 특성이?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왜냐하면 치유관광, 그러니까 말씀하신 산업단지……

○민형배 위원 네트워크를 해야 되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저희가 직접적으로 뭔가 제조를 하거나 이런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보 제공이라든지 홍보, 마케팅, 연계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시작을.

○민형배 위원 범위도 커서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남을 예로 드셨으니까, 전남의 무슨 해남·영암·완도·진도가 한꺼번에 엮일 것들이 많아서?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그러니까 지자체가 그렇게 구성을 해 오시면 저희가……

○민형배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이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에 비하면 지금 문체부는, 이게 제정이 되면 집행을 해야 될 분들인데……

○배현진 위원 그러게요.

○민형배 위원 이것 준비를, 기본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체크해 보니까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어쩌려고 그러세요? 걱정이네.

○**배현진 위원** 제가 나름 21대 문체부의 강력한 필요를 확인하고 이 법을 같이 제정 추진을 한 건데 혹시 법안 추진 안 해도 괜찮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아니요, 저희는 꼭 필요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배현진 위원** 그런데 입법한 당사자인 저조차도 지금 문체부가 민형배 위원님, 위원님들 질문에 간명하게 답해 주실 수 있는 별로 어렵지 않은 사안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난해해지게끔 말씀 주시는데, 오죽하면 제가 오늘 이것 심사 안 할 거라고 예상하고 오셨냐고 지금 말씀을 드렸겠어요? 너무 지금 소홀하게 준비하신 거 아닌가……

○**민형배 위원** 치유관광사업자는, 지금 이게 치유관광사업이라고 하는 업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치유관광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까?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를 들어서 경관이나 온천 이런 예시가 있지 않습니까, 정의에 보면? 그러면 온천에서, 온천을 운영하시면서 웰니스 내지 치유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그런 기관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사업자로……

○**민형배 위원** 아니, 이 온천은 그런 치유기능이 있는 건데?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그렇지만 저희가……

○**민형배 위원** 그러면 그분은 온천업으로도 등록하고 치유관광사업자로도 등록한다 그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는 사실 그분들이 웰니스와 관련된 명상이나 요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걸 보고……

○**민형배 위원** 그러면 새로운 어떤 치유관광산업이 생기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관광산업들을 재분류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복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저희가 보기에는 그게 주된 거고요. 새로운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 그것은 또 저희가 포용을 하는 거지요.

○**배현진 위원** 그 말씀이에요.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로이 분류하고 재편성해서 정부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그래서 아까 사무관께서 클러스터를 구성한다고 얘기한 거고요. 새로이 생기면 치유관광산업 안에 양태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소위원장 임오경**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관광진흥법에서 계속 개정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면, 이게 21대에서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발의를 해서 공청회까지 끝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정부에서는 연구용역 및 중장기 계획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좀 유감을 제가 표하고요. 그리고 업종 분류 작업부터 시작해서 부처별 중복사업 및 법률 충돌이 발생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치유관광의 정의가 명확하지도 않고, 경관 중 일부는 자연유산법이 정의하는 자연유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온천, 음식 등도 기존 관광진흥법 테두리에 들어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소위원장 임오경 우리가 지금 관광사업이란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이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특수한 관광산업인 해양레저관광을 진흥하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 또한 2025년 1월 31일에 지금 예정, 정의가 명확한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큽니다. 이 부분도 진짜 정부에서 생각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답변이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또한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체부의 수용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지금 저는 못 들었어요. 치유관광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면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관광 관련 타 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도 지금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어촌에서 치유관광인 스파를 하면 치유관광법 적용 대상입니까, 이 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대상인데 그 법에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임오경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그래서 그 법을 우선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임오경 관광진흥법이 우선이 되어서 해양레저관광법이 밑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적용 대상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지금 치유관광산업법 적용 대상입니까, 스파 같은 경우는? 치유관광으로 숙박업소에 가면 그건 관광진흥법 적용 대상이에요, 치유관광법 대상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치유관광법입니다. 저희 법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이게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지금 말씀하신 게……

○소위원장 임오경 지금 현재는 관광진흥법 적용 대상이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자꾸 저희도 혷갈리는 거예요.

또한 이게 지금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있어서도 유사한 법률인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은 종합계획을 세울 때 관광기본법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소위원장 임오경 그런데 관광기본법 제2조의2와 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유사한 내용의 자구가 들어가는 수정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구 수정도 저는 정부에서 이 정도는 검토를 하셔서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을 가지고 수정 보완한다 이런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 타 부처하고 중복되는 부분까지도 다 검토하셔서 지금 저희에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고.

또 하나는 치유관광사업의 등록취소 있잖아요, 양수 등. 이것에 관련돼서 우리 관광사업자들은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아서 이미 지금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아서?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이대로 법이 만들어지면 치유관광사업자만 이중 신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신고 대상이 돼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되고.

비슷한 법인 해양레저관광진흥법 또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대로 신고하게 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제8조하고 10조는 삭제를 시켜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삭제하지 않고 배현진 의원님 안대로 간다라면 특례시 같은 경우는 치유관광사업 등록이 불가능해지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검토를 국장님께 잘하셔서 와야 되는데 답변이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다라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립니다.

○**진종오 위원** 저도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 궁금증이 많으시다면 보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한 가지 견으로 1시간 넘게 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김윤덕 의원님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같이 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형배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제정법은 사실 이 정도 논의는 더 해야 됩니다. 이건 더 해야 되는데……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더 해야 된다면……

○**민형배 위원** 제가 또 지금 관광진흥법을 다시 보니까 이 법체계, 전체적으로 법체계 내에서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만약 우리가 이걸 제정하면 관광진흥법에 같이 손봐야 될 대목이 예를 들면 뭡니까, 개정을 같이 해 줘야 될 게?

○**배현진 위원** 위원님, 제가 아까도 질문하시는……

○**민형배 위원** 이게 체계적으로 검토가 안 됐어요, 지금.

○**배현진 위원** 맞아요. 저기 하시는 게 맞는데 질문하시는 것마다 지금 답변을 명확하게 저희가 받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정법을 중복해서 심사하고 이것 지금 논의 더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신속한 심사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이 법안에 대한 충분한 답변과 그게 지금 되지 않는다면…… 문체부의 답변을 기대하면 법안을 심사 보류하시든지, 다음으로. 제가 2개 같이 병합심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형배 위원** 우리 언제 또 있지요?

○**배현진 위원** 아니면 지금 정회하시고 이따가 다시 하시든지. 왜냐하면 점심에 약속 있고 하신데, 이제 누가 한 사람 떠나면 저희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요.

○**소위원장 임오경** 여야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국회법에 의거해서 법안소위를 열 수는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아니에요?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 번을 하는데 저희가 거의 한 번씩은 열게 되어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민형배 위원** 그런데 다음에 해도 괜찮아요?

○**배현진 위원** 예, 괜찮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보류를 하고 다음번에, 조금 사전에…… 예를 들면 제가 보니까 관광진흥법에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이 법 자체만 가지고 보면 아까 지원한, 그러니까 관광치유사업자가 되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를 테면 기존의 온천업자가 관광치유사업자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관광기금 같은 정책자금 지원이라든지 정부에서……

○민형배 위원 그런데 여기 법에는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관광진흥법 찾아본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관광사업자가……

○배현진 위원 자, 다시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 법만 만들어 가지고는 그 근거가 없어요, 지원 근거가. 관광진흥법에 들어가야지 그 지원 근거가 생겨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민형배 위원 그러면 이것 할 때 같이 개정이 돼야지 이 법을 제정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아니, 이 좋은 내용의 법을 정확하게 제대로 포지셔닝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법이 장애물이 돼요.

○배현진 위원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제안드리겠는데 문체부가 정말……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이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것 솔직히 법안 통과돼서 우리 의원들한테 들통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 논의 열심히 하고 있으신 이유가 있잖아요. 답변을 명확하게 주시개끔 시간을 좀 문체부에 주시고.

지금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좀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 병합심사하자고 말씀드린 거랑 심사 보류도 제가 그냥 수긍하겠다라는 말씀드리는 건 속이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마냥 여기서 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위원님들 질의만 하고 있으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이 법안을 발의하신 배현진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그것을 수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2건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가 2시에 개의되도록 되어 있는데 법안소위가 늦어진 관계로 3시로 저희가 시간을 변경했다라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미란 차관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과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승수 김재원 민형배 박수현 배현진 임오경 진종오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전문위원 전완희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장미란

체육국장 강수상

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본부장 최규철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박지영